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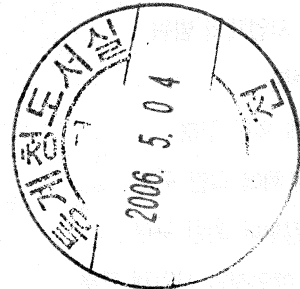
키오III
동142
K2005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조사지침서



B53104



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NTENTS

<http://scensus.nso.go.kr>



I. 조사개요	4
II. 조사일정별 수행사항	9
III. 조사용품 수령	10
IV. 조사대상 사업체 정의 및 범위	12
1. 사업체의 정의	12
2.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	13
3. 사업체 구분	16
가. 장소에 의한 구분	16
나.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16
다. 경영장부에 의한 구분	18
라. 기타 예외적인 사업체 구분	19
V. 현장조사 요령	21
1.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21
2. 사업체 방문 시 유의사항	21
3. 산재보험	23
4. 응답자 면담 요령	24
VI. 준비조사	28
1.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28
2. 사업체명부 확인 및 보완	30
3. 사업체일련번호 부여	31
4. 조사협조공문(인사장)	32
5. 스티커(사업체일련번호표) 부착	32

6. 인터넷 조사	32
VII. 조사표 작성요령	34
1. 일반적인 유의사항	34
2.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37
가. 난외사항	37
나. 사업체 단위 조사항목	37
(1) 기본항목	37
(가) 사업체명	37
(나) 대표자명	38
(다) 창설년월	38
(라) 소재지	40
(마) 사업장 변동	40
(바) 조직형태	42
(사) 사업체 구분	43
(아) 사업의 종류	44
(자) 종사자수	48
(차) 영업기간	51
(카)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51
(타) 사업장 건물면적	53
(2)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특성항목	54
(가) 상품매입처별 구성비(G)	54
(나) 상품판매처별 구성비(G)	56
(다) 객실(석)수(55)	57
(라) 체인점 가입여부(52, 552)	58
(마) 매장면적(52)	59
(3) 서비스업부문 특성항목	59



(가)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64, 72~75)	59
(나) 교육시설(80)	60
(다) 병·의원 입원시설(8511~8512)	61
(라) 사회복지 수용시설(86)	62
(마) 경기·오락시설(883, 889)	63
(4) 사업실적	64
(가) 14-1 사업실적(모든 업종 공통)	64
(나) 14-2 사업실적(업종별 사업실적)	67
『G 도·소매업 사업실적』	67
『H 숙박·음식점업 사업실적』	72
『K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실적』	73
『O 교육서비스업 및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실적』	75
『J, L, M, Q, R 사업실적』	75
다. 기업체 단위 조사항목	77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77
(2) 유형자산	77
(3) 무형자산	79
(4)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80
라. 비 고	81
마. 본사조사(조사표 7) 요령	82
(1) 기업체명	82
(2) 대표자명	82
(3) 창설년월, 법인등록번호	82
(4) 소재지	82
(5) 조직형태	83
(6) 자본금 또는 출자금	83

(7) 사업의 종류	83
(8) 종사자 수	83
(9) 결산 마감월	83
(10) 사업실적	84
(11)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84
(12) 유형자산	84
(13) 무형자산	84
(14) 관할 사업체 현황	84

VIII. 조사표류 내용 검토요령 86

1. 조사대상 여부 확인	86
2. 기본사항 검토	87
3. 연관사항 검토	88

IX.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89

[부 록]

1. 조사표와 재무제표의 관계	94
가. 재무제표(기업회계)와 총조사 항목 연계표	94
나. 학교회계와 조사표와의 관계	97
다. 기타 부속명세서와 조사표와의 관계	99
라. 감가상각 및 연구개발비 해설	101
2. 재무제표와 조사항목 대비표	103
가. 손익계산서와 사업실적	103
나. 대차대조표와 유·무형자산	106
3. 사업체 명부	106
4. 업종별 조사표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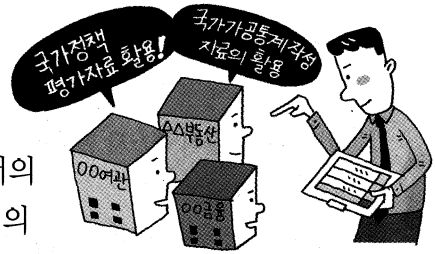
조사개요



1 조사현황

- 2005년 기준 조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 총조사를 병행 실시

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는 사업체와 업무 담당부서의 응답부담과 조사부담 및 예산 등을 줄이는 등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실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

서비스업총조사

- 통계청에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

2 조사목적

- 사업체 분포 및 고용구조와 경영실태 등에 관해 심층적이고 세분된 자료를 파악하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국내총생산(GDP), 지역소득(GRDP) 추계 및 산업연관표 등 가공통계 작성에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체통계의 표본틀(Sample-Frame) 및 수준점(Bench-mark)자료로 활용 등

3 조사연혁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1994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조사 실시
- 2002년 : 제 9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와 병행 실시
- 2006년 : 제 13회 조사로서 「서비스업총조사」와 병행 실시

	실시년도	통 계 조 사 명	산업분류상 조사범위
1회	1994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전(全) 산업 개인경영의 농·임·어업 등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 } 제외
Ⅱ	Ⅱ	"	
13회	2006	"	

■ 서비스업 총조사

- 1968년 : 「상업센서스」명칭으로 처음 조사 실시
- 2002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조사(제 9회)
- 2004년 4월 : 조사기준년도 변경(「1」, 「6」자년→「0」, 「5」자년)
- 2006년 4월 : 제 10회 조사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실시

	실시년도	통 계 조 사 명	비 고
1회	1968	상업센서스	
2회	1971	도소매업센서스	상업센서스→도소매업센서스로 명칭 변경
3회	1976	"	
4회	1979	"	
5회	1982	"	
6회	1986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총사업체통계조사와 병행 조사
7회	1991	"	"
8회	1997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조사
9회	2002	"	"
10회	2006	서비스업총조사(명칭변경)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조사

4 법적근거

■ 통계법 제 4조 및 제 8조에 의한 지정통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제10137호(통계청)

16개 시·도별 승인번호 서울(20105호), 부산(20204호), 대구(20303호), 인천(20403호), 광주(20504호), 대전(20604호), 울산(20702호), 경기(21003호), 강원(21103호), 충북(21203호), 충남(21304호), 전북(21403호), 전남(21503호), 경북(21604호), 경남(21704호), 제주(21803호)

- 서비스업 총조사 : 제10108호

■ 서비스업 총조사 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제487호)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대분류 기준으로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 전국의 모든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 - 대분류 중 아래 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10개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단, 다음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개인이 경영하는 농·임·어업사업체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사업체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52820)
 - 그 외 기타 무점포소매업(52899)
 - 이동음식점(55223)

5] 조사기간

- ▶ 조사 기준일 : 2005. 12. 31.
- ▶ 조사대상기간 : 2005. 1. 1. ~ 12. 31.(1년간)
- ▶ 조사실시기간 : 2006. 4. 6. ~ 4. 29.(22일간)
 - 준비조사 : 4. 6. ~ 4. 7.(2일간)
 - 본조사 : 4. 10. ~ 4. 29.(20일간)

6] 조사체계 및 조사방법

■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실시



-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또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배포 조사, 인터넷조사 등)

7 조사사항

가. 조사표의 종류 : 7종

조사표종류	대상 산업	조사 부문
조사표 「1」	A(01~02), B(05), C(10~12), D(15~37), E(40~41), F(45), I(60~63), N(7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부문
조사표 「2」	G 도매 및 소매업(50~52)	서비스업총조사 부문
조사표 「3」	H 숙박 및 음식점업(55)	
조사표 「4」	K 금융 및 보험업(65~67)	
조사표 「5」	O 교육서비스업(80),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조사표 「6」	J(64), L(70~71), M(72~75), Q(87~88), R(90~93)	
조사표 「7」	본사조사	

나. 조사항목

■ 사업체 조사항목 : 22개 항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총조사의 공동조사항목 : 9개 항
 - ① 사업체명
 - ② 대표자명
 - ③ 창설년월 및 사업자등록번호
 - ④ 소재지
 - ⑥ 조직형태
 - ⑦ 사업체 구분
 - ⑧ 사업의 종류
 - ⑨ 종사자수
 - ⑩ 영업기간
 - 총조사 공통조사항목 : 3개 항
 - ⑪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 ⑫ 사업장건물면적
 - ⑭ 사업실적 (① 매출액 ② 매출원가 ③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연간매출액 조사

• 특성조사항목 : 10개 항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부문 : 5]

- 13 -1 상품매입처별 구성비(도·소매업)
- 13 -1 객실(석)수(숙박·음식점업)
- 13 -2 상품판매처별 구성비(도·소매업)
- 13 -3 체인점 가입여부(소매업·음식점업)
- 13 -4 매장면적(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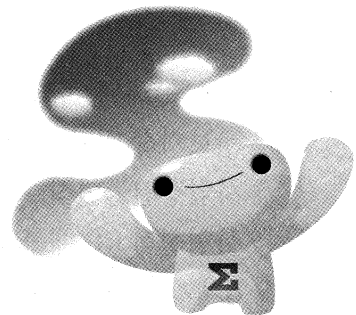
[서비스업 부문 : 5]

- 13 -1 교육시설(교육서비스업)
- 13 -1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통신업, 사업서비스업)
- 13 -2 경기·오락시설(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
- 13 -2 병·의원 입원시설(보건업)
- 13 -3 사회복지수용시설(사회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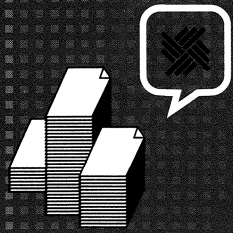
■ 기업체 조사항목 : 6개 항

-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회사법인)
- 16 유형자산
- 17 무형자산
- 18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9 결산마감월(본사조사)
- 14 본사관할 사업체현황(본사조사)

※ 5 사업장 변동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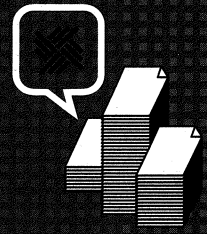


조사일정별 수행사항





조사용품 수령



1 조사 휴대용품

가. 조사원증

- 사업체 방문 조사 시 신분확인 목적으로 사용
-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반납

나. 조사지침서

- 조사지침서에는 조사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수록한 지침서로서 교육을 받은 후 2~3번 더 정독하여 내용을 완전히 숙지
- 조사기간 중 항상 휴대하여 현장에서 조사지침으로 활용

다. 사무용품

- 구성물 : 필기용품 필통, 필기구(적·흑색 볼펜, 연필), 지우개, 삼각자, 칼, 철핀, 조사원 가방 등
- 구성물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 지참하여 업무에 활용

2 준비조사용

가. 조사구 요도

- 조사구별로 조사구 경계, 주요 지형지물, 사업체 위치, 사업체일련번호 등이 표시된 약식 지도
- 조사가 끝나면 보완 후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2부를 제출

나. 사업체 명부

- 조사업무를 위해 조사구별로 해당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명부
- 조사가 끝나면 보완 후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2부를 제출

다. 조사 협조공문(인사장)

- 이번 총조사의 개요와 목적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업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사업체의 장에게 전달하는 문서임
- 사업체 방문 시에 사업체의 응답자에게 전달하되 가능하면 대표자나 상급자에게 전달

라. 스티커(사업체일련번호)

- 사업체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사업체 출입구의 오른쪽 상단에 부착하고, 본 조사가 끝난 뒤 조사여부에 적색볼펜으로 '✓' 표시

마. 홍보용전단

-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사항 등 조사개요와 인터넷 조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전단으로 법인(⑥ 조직형태 ② 회사법인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배부

3 본조사용

가. 조사표

- 조사표 종류는 7종이며, 조사가 끝난 다음 조사구별(업종별조사표) 또는 시·군·구별(본사조사표)로 편철하여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나. 조사표 작성요령

- 조사지침서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 작성(자기기입방식)을 원할 경우 조사표와 함께 1부를 배부하고 필요사항을 설명
- 일반(업종)조사표용과 본사조사표용으로 2종이 있으므로 활용에 특히 주의

다. 조사원 연락전(방문안내)

- 응답자 부재등으로 응답자와 면접을 할 수 없어, 재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재방문 예정일,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적어 놓는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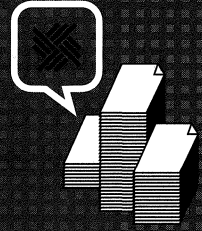
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

- 조사표 작성 시 「사업의 종류」 중 산업분류부호를 확인하여 보완·기입 시 참고자료로 활용

마. 조사표 표지

- 조사구별(업종별조사표) 또는 시·군·구별(본사조사표)로 조사표를 편철할 때 사용하는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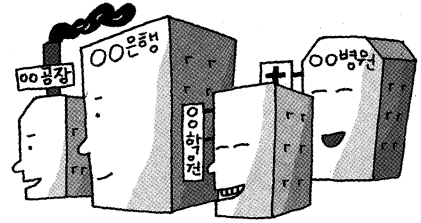
Ⅰ 사업체의 정의

■ 「사업체」란 영리·비영리 또는 관공서의 인·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①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한 소유권 또는 통제 아래

② 재화의 생산·판매나 서비스제공 등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개의 경영단위를 말함

■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출장소, 영업소, 상점, 은행, 학교, 학원, 개인교습소, 병원 등



기업체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서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임

■ 사업체와 기업체의 구분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1개의 기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활동을 할 경우 장소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그림 1 참조>

- 아래 그림에서 기업체인 IT전자(주)는 5개의 사업체(본사, 수원공장, 구미공장, 대전 A/S센터, 부산영업소)로 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각각 조사되어야 함

[IT전자(주) 의 구성도]

<그림 1>



2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

■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A 농업 및 임업」 및 「B 어업」 중 —————> 개인경영 사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가, 농장, 목장, 양어장, 양식장 등
-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중 —————> 군사시설(■ 군부대, 중대본부 등)
- 「O 교육 서비스업」 중 —————> 군사학교(■ 사관학교, 3사관학교 등)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 군병원(■ 국군통합병원 등)
- 「S 가사서비스업」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가정부, 교사 등)
- 「T 국제기관 및 외국기관」 (■ 대사관, 영사관, UN기관 등)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52820)
 - 그 외 기타 무점포소매업(52899)
 - 이동음식점(55223)

고정설비의 조건

- ① 판매장소의 건물(점포)이 비바람에 내구성이 있으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을 것
- ② 상기 ①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틀리기 쉬운 사업체 유형

사 례	조사대상인 사업체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체
휴업중인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 등을 위한 상근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 • 곧 영업이 재개될 임시휴업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 등을 위한 상근 종사자가 없는 사업장 • 6개월 이상 장기간 휴업으로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장
노 점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와 차단시설이 있는 구축(진)물 형태로 이동성 없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성이 있거나 외부와 차단시설이 없는 사업장
포장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성이 없고, 일정 지정 장소에 집단적으로 소재하며 상설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 등에서 산재하며 일시적이고 비상설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동일 경영주가 서로 다른 지역의 5일장을 순회하며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옥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옥이 아닌 노점, 행상을 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사 례	조사대상인 사업체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체
노인정(노인회, 경로당), 부녀회, 동창회, 종친회 등 각종 친목성격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종사자가 있는 단체 (자원봉사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종사자가 없는 단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 운영 하는 농장 및 염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연구소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 이거나 경영장부가 따로 있는 사 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연구소 등에서 실습용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개인 사업자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자동차영업소의 딜러, 보험영업소의 보험 설계사, 합동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무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사업자가 소속된 해당 영업소 및 사무소만을 1개의 사업체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 않고 해당 영업소 및 사무소의 무급종사자로 조사
창고(물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제품 또는 타사 제품을 보관 하고 그 수수료를 받으며 창고 업무를 위한 상근종사자가 1명 이상 있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제품만을 보관하고 창고 업무를 위한 상근종사자가 없는 경우
종교단체 또는 기타 단체 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어린이집, 유치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단체와 별개 독립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동일 장소라 하여도 별개의 사업 자등록이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단체와 동일 장소에서 운영 되며 별개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사무소 별개의 독립된 장소에 사업체의 한 부서가 따로 나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개의 장소로 분리되고, 상근 종 사자가 1명이상 있는 경우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개의 장소로 분리되지 않고 상근 종사자가 없는 사업장
개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또는 판매 시설이 있으며 별도의 전담종사자가 있고 이를 별도의 사업체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제조 또는 판매시설이 없거나 전담 종사자가 없어 이를 별도 사업체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내 설치한 벤처기업 계절사업체, 장례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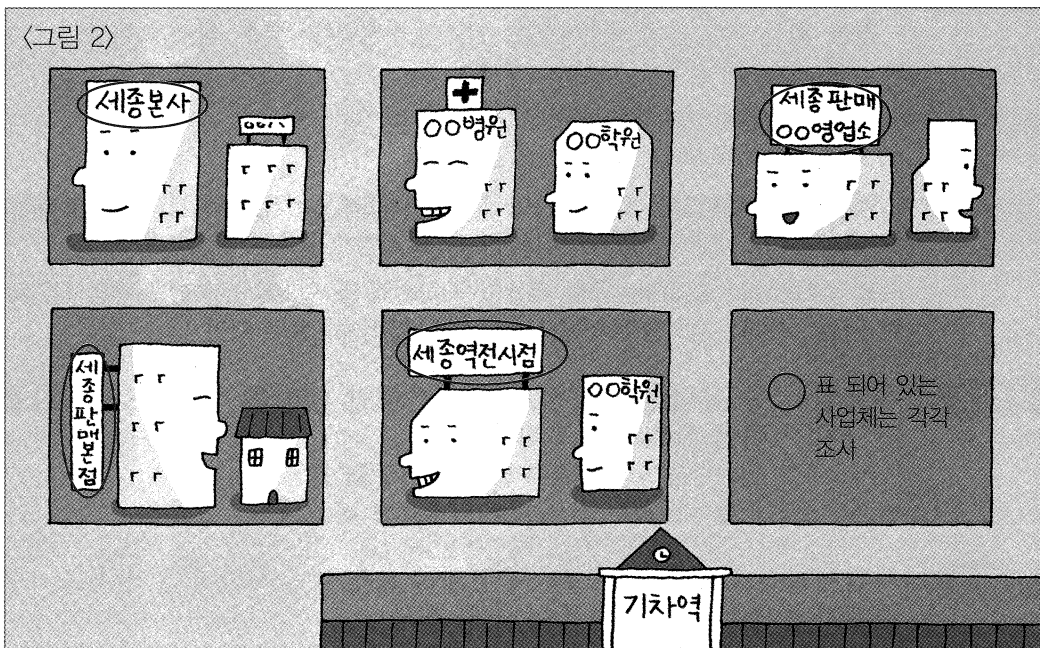
사업체 누락 및 착오 조사하기 쉬운 사례

- 사례 1** 시장, 상가 등 건물 밀집지구에 있는 사업체의 누락
- 좁은 거리 및 뒷골목 등도 꼼꼼히 순회하여 사업체 유무 확인
- 사례 2** 지하, 빌딩 등에 있는 사업체의 누락
- 식별하기 힘든 장소에 많은 사업체가 있으므로 빌딩관리인에게 문의하여 사업체 유무 확인
- 사례 3** 구내에 있는 사업체의 누락
- 공장, 회사, 학교 등의 구내에 있는 별개의 하청업체사무소, 식당, 매점 등
☞ 구내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체 유무 확인
- 관공서 구내에 있는 민영식당 및 매점 등
☞ 청사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체 유무 확인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소매점포 안에 있는 별개의 사업체(임대 매장)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체 유무 확인
- 입장료를 내고 출입하는 공원, 유원지, 지하철역 등 구내에 있는 별도 경영 사업체
☞ 공원, 유원지, 지하철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체 유무 확인
- 사례 4** 유흥업소 등 응답을 거부하거나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등 응답자를 만나기 어려운 사업체의 고의 누락
- 가요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주류 판매 가능) 등을 경영하는 사업체
☞ 시·군·구 공무원 또는 조사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조사
- 사례 5** 사업체밀집 지역의 경우 조사구경계를 분명히 숙지하지 않거나 조사구 경계가 불명확하여 누락 또는 중복 조사
- 기본도 및 조사구 요도상의 조사구 경계를 명확히 숙지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지자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누락 및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사례 6** 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가 앞으로 철거될 예정이라 하여 조사에서 누락
- 사례 7** 금·은방을 경영하면서 시계부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로 조사해야 하나, 금·은부, 시계부를 각각 분리하여 2개의 사업체로 착오조사
- 사례 8** 열관리시공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보일러 판매와 설비공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큰 산업으로 1개 사업체로 조사하여야 하나, 이를 건설업과 도·소매업 2개 사업체로 구분하여 착오조사
- 사례 9** 동일건물 내 ○○자동차가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운영하고 임금지불대장 등의 경영장부를 달리 작성·관리하는 각각의 사업체를 1개 사업체로 착오 조사한 경우
- 사례 10** 주유소에서 마트를 같이 운영하고 임금지불대장 등의 경영장부를 달리 작성·관리하는 각각의 사업체를 1개 사업체로 착오 조사한 경우

3 사업체 구분

가. 장소에 의한 구분

- 경영주체가 동일하여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장소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그림 2참조>
- 서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지역적으로 인접(담장, 도로, 하천, 제방 등에 의해 분리)해 있는 경우 임금지불대상, 매입·매출명세서, 현금출납장부 등 경영 장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1개 사업체로 조사



나.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산업활동을 영위하여도 경영주체가 서로 다르다면 경영주체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그림 3참조>



❖ 백화점의 사업체 구분

- 점포가 혼재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므로 백화점 관리사무실에서 직영, 임대 여부를 확인 후 대상사업체를 파악하여 조사
- 백화점의 매장종류별 사업체 구분방법 <그림 4참조>
 - 직영매장과 특정매입매장은 1개 사업체로 통합하여 조사

백화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

- 직영매장 : 물품의 구매, 판매 및 재고 등 경영관리가 백화점 측의 독자적인 책임아래 이루어짐
- 특정매입매장 :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업체 상품의 재고, 판매 등을 백화점에서 직접 관리하여 주고, 매출액의 일정 마진율만큼 수수료를 받음

- 임대매장 : 백화점 직영매장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백화점의 임대매장

- 임대(갑)매장 :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매장으로 물품의 판매, 구매, 재고관리 등이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이루어짐
- 임대(을)매장 : 일명 수수료매장이라 하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고 임대한 매장으로 판매관리는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은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운영

[특정매입매장과 임대매장의 비교]

	매장 설립근거	매장권리 (사용·수익권) 귀속	매장의 이전	조사대상
특정 매입매장	특정매입계약에 기초	백화점·할인마트 등에 귀속	백화점·할인마트의 방침에 따라 이동이 가능	백화점·할인마트
임대매장	임대계약에 기초	임차인에 귀속	계약에 의하여 한 장소로 고정	임대매장을 빌린 영업주

<그림 4>

○○백화점

라운지(직영)		수영장(직영)	
가구점(직영)			
전자제품(직영)			
전자(특정매입)		임대(갑)	임대(을)
임대(갑)	임대(을)		
B1 주차장(직영)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사례

사례 11 역, 극장, 운동경기장, 놀이공원, 백화점, 호텔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 또는 건물에 여러 개의 매장이 있는 경우

- 임대매장은 매장별로 각각을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
- 직영매장은 별도의 계산대가 있더라도 총괄 관리 주체에 포함하여 1개 사업체로 조사

사례 12 기관 구내의 이발소, 매점, 서점, 식당 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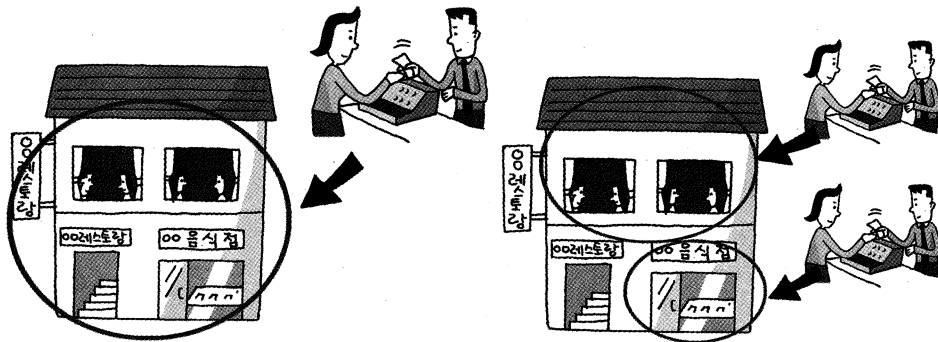
- 기관에서 직접 운영 : 해당 기관에 포함하여 조사
- 외부인이 임차하여 운영 : 각각을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사례 13 백화점에서 영업주가 수시로 바뀌며 단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는 임시 행사매장

- 조사대상에서 제외

다. 경영장부에 의한 구분

- 장소와 경영주체가 동일하여도 임금지불대상, 매입·매출명세서, 현금출납 장부 등 경영장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경영장부단위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그림 5참조)



경영장부에 의한 구분사례

사례 14 동일 장소에서 경영주가 같은 대학과 부설 병원, 연구소 등이 함께 있는 경우

- 1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가 있고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개 사업체로 조사

사례 15 동일 장소에서 동일 경영주가 운영하는 선·포교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경우

- 1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가 있고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개 사업체로 조사

라. 기타 예외적인 사업체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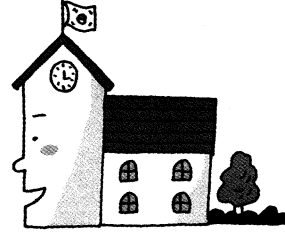
학 교

☒ 학교별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의 사업체로 조사

☒ 단,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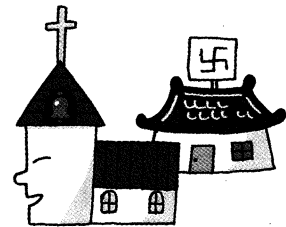
- ☑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야간반, 시간제 과정, 평생교육원 등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별개 사업체로 조사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 대학교에 포함하여 조사
- ☑ 동일재단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면 학교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 ☑ 본교와 분리된 다른 장소에 학교의 제 2, 3 캠퍼스, 분교 등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 ☑ 일반대학원은 1개 사업체, 특수대학원은 각각을 별개 사업체로 구분

☐ <한국대학교>	• 한국대학교 일반학부(서울캠퍼스)	—————>	사업체
	• 한국대학교 일반학부(수원캠퍼스)	—————>	사업체
<일반대학원>	• 한국대학교 대학원	—————>	사업체
<특수대학원>	•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업체
	• 한국대학교 보건대학원	—————>	사업체
	• 한국대학교 산업대학원	—————>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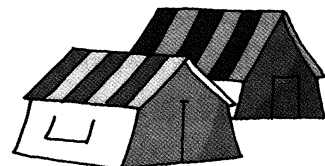
종 교 단 체

☒ 교회, 사찰 등이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장, 보육원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장, 보육원 등이 교회, 사찰 등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교회, 사찰 등과는 별개로 각각의 사업체로 조사



5일장 등 비상설 시장 내의 사업체

☒ 고정시설(풍우를 막는 시설을 갖추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것)을 갖추고 있는 시장 내의 사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행상 및 노점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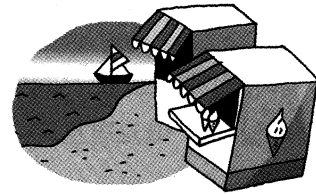


각종단체(작목반, 어촌계, 동호회, 종친회, 조기회, 동창회 등)

- 해당 단체의 고유 업무를 위한 상근종사자가 1명이상 있는 경우만 사업체로 조사
 - ▣ 사업체(약국 등)를 별도 경영하며 동창회 등 각종 단체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동창회는 사업체로 보지 않음

계절사업체

- 민박, 해수욕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과 같이 계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2005년 중 1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체로 봄
 - ▣ 피서지나 산지 등에 고정적 설비를 갖추고, 연중시기를 정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체는 조사 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상근종사자가 있으면 조사



가정집에서 하숙, 피아노교습소 등을 운영

- 조사자가 인지 가능한 간판 또는 표지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체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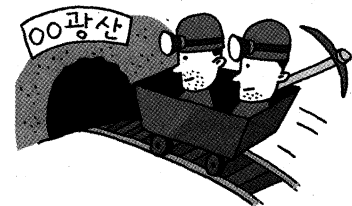


외판원

- 보험, 화장품, 자동차 등의 외판원은 각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개개인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 않고, 해당 출장소, 대리점 등의 무급종사자에 포함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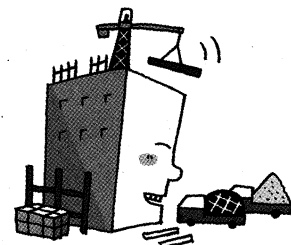
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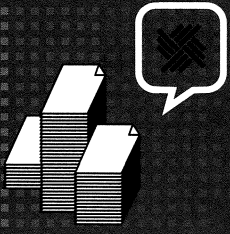
- 다른 사람의 광산 일부에 대한 채굴권을 맡아 경영하는 광산(덕대)은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지만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현장 및 현장사무소는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



건설현장

- 건설현장의 현장사무소는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예 : ○○건설××지사)에 포함하여 조사. 따라서 현장사무소는 별개 사업체로 보지 않지만, 하도급업체는 원도급 업체(하청을 준 사업체)와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1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받은 사람이 조사완료 시까지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이 대리조사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도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조사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 23조)에 의하여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지도공무원이나 총관리자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조사 진행사항 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 완성된 조사표는 1~2일마다 조사관리자에게 조사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별도자료(사업체 홈페이지의 재무제표 및 기타 행정자료 등)를 이용하여 탁상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업체 방문 시 유의사항

- 조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특히, 야간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안전문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조사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사업체를 방문하기에 앞서 지참해야 할 용품이 빠지지 않았나를 점검한다.
-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올바른 언행으로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응답자와 불필요한 언쟁을 하지 않도록 주의

- 파출소,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지도공무원 등의 비상연락처를 메모해 둬
- 휴대폰이 있는 경우 사전에 연락처를 입력해 둬
- 조사당일의 일정을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미리 알려줌
- 간편하면서도 단정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함

■ 조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사항

- 가능하면 낮에 방문하고, 야간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함
-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은 가급적 피하여야 함
- 야간 방문 시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하도록 하고,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함
- 유흥업소, 숙박업체 등을 방문 시에는 가능하면 가족,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또는 지도공무원 등의 협조를 받아 함께 다녀야 함
- 어둡거나 물건을 쌓아 놓은 곳 등 위험한 장소는 가급적 피해 안전한 장소로 다닐 것
- 사업체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사업체를 재방문하여야 하는 경우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고 약속한 날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	「조사표」와 「조사표기입요령」을 배부한 다음 약속된 날에 사업체를 재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현장에서 검토하여야 함
기입누락이나 착오기입사항이 발견 된 경우	반드시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

■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필요 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함
- 정중한 태도로 면접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피하여야 함
- 부재중인 사업체에 들어가 도난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함
- 불안을 느낄 때는 조사를 중단하고 되돌아 오
- 위험이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쳐 주위의 도움을 청하도록 함

■ 사고 유형별 사례 및 주의 사항

- 넘어지고 떨어져 다침
- 어두움으로 인해 계단을 다 내려온 줄로 착각하여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다침

-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열리는 문에 밀려 2층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침
-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밟고 지나던 중 뚜껑이 하수구로 빠져 허벅지를 다침
- 교통사고
 - 조사관리자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조사지역으로 가던 중 오토바이 전복으로 인해 손가락과 다리를 다침
- 사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오던 중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다침
- 기타
 - 자전거를 타고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 중 넘어져 다침
 -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나 야간 또는 비가 올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함

3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의의

-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도입된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임
-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산적 복지추진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2001. 1. 1.부터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어 이번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요원 여러분들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 시 산재보험의 급여혜택을 받게 됨

■ 산재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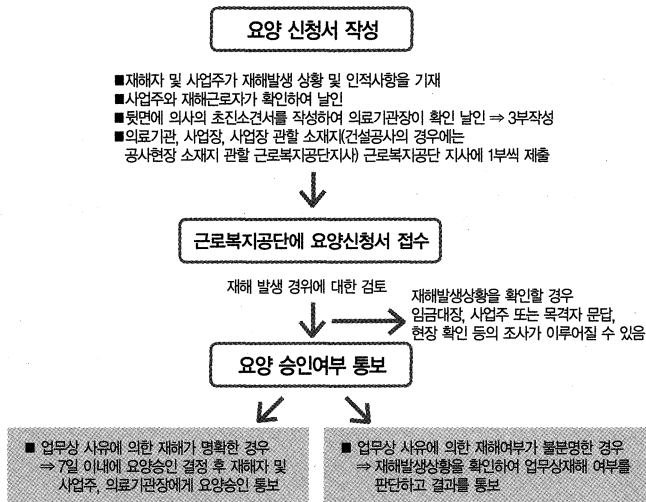
-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시·도, 시·군·구의 장)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

■ 산재보험 급여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이 있음
- 급여의 청구는 의료기관, 산재근로자, 시·군·구의 장, 수급권자가 관련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자체(시·군·구), 의료 기관 등에 제출함

• 요양신청방법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 및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요양중 일때 신청 합니다.



※ 보험가입 :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의 조사활동 중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며, 전체 채용일수가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가입 됩니다.

- ▶ 서비스업총조사 및 종합상황실 : 080-700-2006
- 긴급재난구조(안내), 구급차 : 119 (국번 없이 전국동일)
- 범죄신고 : 112 (국번없이 전국동일)

4] 응답자 면담 요령

- 사업체를 방문 후 먼저 어디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신분과 방문목적을 밝힌다.
예 “저는 ○○시(군·구)에서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를 하러 온 조사원 ○○○입니다”
- 적격 응답자(사업체의 사정을 잘 아는 사업주, 경리 및 재무회계팀원 등)를 만나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조사표를 작성한다.
예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는 경제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 자료제출 의무사항(통계법 제12조) 및 통계목적외의 사용금지(통계법 제13조) 조항을 반드시 응답자에게 알린다.
-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하고 계속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리자나 총관리자에게 보고

사업체 방문시 받을 수 있는 질문유형과 대응요령

가. 일반적인 사항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이 조사는 사업체와 고용인력 등의 구조변화와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하면 안되나요, 꼭 해야 하나요?

▶ 안하시면 많은 예산(약 300억원 소요)을 들여 조사하는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각종 경제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법(통계법 제12조 2항 실시조사)에 의해서도 사업체에게 통계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 조사합니까?

▶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원을 뽑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 지금 바쁘시다면 시간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때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 통계는 믿을 만 합니까?

▶ 우리나라의 통계작성 기법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 그리고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모가 큰 사업체만 조사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이 영세한 업체까지 모두 조사 합니까?

▶ 통계조사는 대상 사업체를 모두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일부 사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 조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체에서 응답하셔야만 정확한 통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조사된 내용으로 과세자료에 쓰여 지는 것은 아닌가요?

▶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통계법(제 13조)에 규정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사실대로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한 내용이 타 경쟁사업체에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요?

▶ 조사원과 담당공무원이 조사내용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통계법 제 14조와 제 2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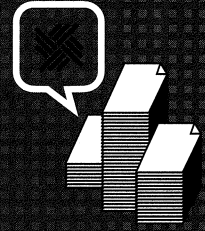
▶ 원하신다면 이 비밀보호용 봉투에 넣어서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나. 조사항목에 관한 사항 : 이것(항목)은 왜 조사합니까?

왜 ??	아 !!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	→ 사업체 누락 또는 중복 여부를 확인
소재지	→ 소지역(읍·면·동 등)단위 통계작성과 표본 조사를 위한 모집단 명부작성에 사용
조직형태 및 사업체구분	→ 조직형태 및 사업체구분별 경영실적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경제구조변화를 파악
사업장 변동 및 창설년월	→ 부문별 사업체의 생성·소멸실태를 파악하고 모집단 및 표본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의 종류	→ 업종별 경제구조와 분포추이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종사자수	→ 종사상 지위 및 성별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영업기간	→ 영업기간과 매출실적간의 합리적 판단자료와 업종별 근로일수 등을 파악
사업장 건물(매장) 면적	→ 사업장 규모 및 분석지표 작성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 서비스업의 IT 기반과 그 활용률을 파악
상품매입처별 구성비	→ 매입상품의 유통구조 상태를 파악하여 도소매업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상품판매처별 구성비	→ 매출상품의 유통구조 상태를 파악하여 도소매업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객실(석)수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규모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분석지표 생산에 활용
체인점 가입 여부	→ 소매 및 음식점업의 신종업태 경영실태를 파악

교육 시설	→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 투자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시설투자정책 등의 자료로 활용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	→	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연구·기술직 종사자 고용현황을 파악
경기·오락시설	→	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의 시설현황을 파악
병·의원 입원시설	→	병·의원 입원시설 상황을 파악하여 병실지원 등 의료보건부문의 투·융자정책 등에 활용
사회복지 수용시설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확보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수립
사업실적(연간총매출액)	→	업종별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항목으로서 GDP, GRDP추계 등에 활용
자본금 또는 출자금	→	기업의 자본규모와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업종별 투융자정책 수립 등에 활용
유 형 자 산	→	부문별 자산구조와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여 투융자정책 수립 등에 활용
무 형 자 산	→	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투자지표로 활용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서비스업부문의 R&D 투자 상황을 파악
결산마감월(본사조사)	→	회계기간과 매출액간의 타당성을 검증
본사 관할사업체 현황(본사조사)	→	기업의 본·지점간 지배구조 파악과 업종별 사업 현황을 파악

VI. 준비조사



- 준비조사는 본조사(4. 10.~4. 29.) 전에 조사구역도와 사업체명부 등을 이용하여 담당 조사구의 경계, 지형지물 및 사업체의 변동 여부를 확인·보완하는 업무를 말함
- 조사구는 조사의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로, 강, 하천, 시설물 등 주요 지형지물을 경계선으로 이용하여 사업체수가 50±20개(30~70개)씩 되도록 행정 읍·면·동을 분할한 구역단위

조사구의 종류

※ 조사구는 일반조사구(특성 1)와 집단조사구(특성 2~4)로 구분

- … 일반조사구(특성번호 1) : 사업체가 밀집되지 않은 일반지역 조사구
- … 빌딩조사구(특성번호 2) : 백화점, 대형건물 등과 같이 단일 건물 내에 1개 이상의 조사구가 설정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체수가 밀집된 건물 조사구
- … 시장조사구(특성번호 3) :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칭하며 1개 이상의 조사구가 설정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체수가 밀집되어 있는 조사구
- … 지하조사구(특성번호 4) : 지하상가와 같이 연결된 지하공간에 1개 이상의 조사구가 설정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체가 있는 지하 조사구

- 조사구역도는 조사구별로 조사구경계, 주요 지형지물,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 등을 표시한 약식 지도

■ 준비조사 과정



1] 조사구역도 확인 및 보완

■ 조사구 경계의 확인

- ✦ 담당 조사구경계가 조사구역도와 기본도(시·군·구 비치, 읍·면·동별로 작성)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및 보완(적색)

■ 지형지물의 확인 및 보완

- ❖ 조사구역도상에 표시된 주요 지형지물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지형지물 위치에 맞게 적색볼펜으로 수정
- ❖ 누락 또는 신축한 건물은 적색 볼펜으로 “□” 표시하고, 신축중인 건물은 “[□]” 표시

■ 사업체 위치(건물) 확인 및 보완

- ❖ 담당 조사구내에 누락 또는 새로 생긴 사업체가 있는지 건물별로 빠짐없이 철저히 확인

■ 집단조사구 정보 수집

- ❖ 담당 지역이 집단조사구일 경우 빌딩관리사무소, 시장변영회,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현황도 등 조사대상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집

① 부분 확대도를 작성할 수 있는 현황도
 ② 해당 조사구내 조사대상 사업체명부
 ③ 사업체의 일반현황(사업장 면적, 입주일자 등)

- ❖ 이 때 수집된 기본정보는 본조사시 꼭 확인하여야 함

■ 조사구특성번호 변경

- ❖ 조사구 특성번호가 변경(예 : 일반조사구 → 시장조사구)된 경우에는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방법을 지시 받아야 함

■ 개인운수업 (998-1, 999-1) 조사구

- ❖ 조사구번호 998-1 및 999-1은 개인택시, 개별화물 및 개인용달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읍·면·동단위로 묶어 설정한 조사구를 말함
 -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일정치 않은 개인운수업체는 각 차량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며 차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체의 주소지로 간주하여 조사
 - 조합(협회)에서 제공받은 명부를 참조하여 시·군·구에서 조사관리자들이 일괄조사, 단 조합에 등록된 개인의 주소지가 타 시·도(시·군·구)로 되어있는 경우는 조합의 주소를 사업체의 주소지로 간주하여 조사

2 사업체명부 확인 및 보완

■ 사업체명부란 담당 조사구별로 행정구역분류부호, 조사구번호,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기본 정보를 수록한 명부

■ 사업체명부

변동사유	증가: ①전 입 ②신규 ③누락
	감소: ④장기휴업 ⑤폐업 ⑥기타(전출, 중복, 대상외 등)

대구 남구 대명1동(2204056)

조사구번호 001-1

① 일련 번호	② 사업체명	③ 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창설 년월	⑦ 사업장 변동	⑧ 조직 형태	⑨ 사업체 구분	⑩ 산업 분류	⑪ 사업체변동사유		⑫ 비 고
										증가	감소	
1	시대알미늄상사	손정기	053/656/7055	대명1동 784번지 8호 15/6	2001. 11.	1	1	1	28111			
2	사상 퍼용원	김자숙	053/622/1211	대명1동 784번지 8호 15/6	2005. 07	1	1	1	93112	1	6	
3	점보마트	박정자	053/652/1116	대명1동 784번지 8호 15/6	2001. 01.	1	1	1	52611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52	신진마트	박인수	053/638/7889	대명1동 75번지 10호 2/4	2006. 03.	2	1	1	52611	1		

■ 사업체명부 상의 내용이 불일치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 적색으로 변경된 내용에 두 줄을 긋고 행간 여백을 이용하여 바르게 정정 기입

■ 행정구역분류부호

- 2005. 12. 31. 기준 「행정구역분류부호표」를 이용하여 변동이 있으면 수정

■ 조사구번호

- 조사구번호(앞 3자리) - 특성번호(뒤 1자리)를 수록

① 사업체일련번호

- 담당 조사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순서대로 부여한 일련번호

② 사업체명 및 ③ 대표자명

- 해당 사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잘못 기입된 경우 사실대로 수정

④ 전화번호

- 전년 조사 시 해당사업체의 응답자와 연결이 가능한 전화번호이므로 누락 또는 착오기입된 경우 수정

⑤ 주소

- 해당 사업체가 소재하는 법정동, 번지, 호, 통, 반 및 빌딩, 시장, 상가에 있는 경우 동, 층, 호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누락 또는 착오기입된 경우 수정

⑥ 창설년월

- 해당 사업체의 창설년월이 누락 또는 착오 기입된 경우 수정

⑦ 사업장변동

- 해당 장소에 사업장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 「1」 사업장 존속, 「2」 사업장 신설 및 누락, 「3」 대상외, 「4」 사업장 철거 및 폐쇄

⑧ 조직형태

- 해당 사업체의 조직형태가 변경 또는 착오 기입된 경우 수정
 - 「1」 개인사업체, 「2」 회사법인, 「3」 회사이외의 법인, 「4」 국가·지방자치단체, 「5」 비법인 단체

⑨ 사업체 구분

- 해당 사업체의 사업체구분이 변경 또는 착오 기입된 경우 수정
 - 「1」 단독사업체, 「2」 본사(점), 「3」 지사(점), 영업소, 공장

⑩ 산업분류

- 사업체의 주된 사업에 대한 산업분류이므로 누락 또는 착오 기입된 경우 수정

⑪ 변동 사유

- 사업체별로 증가, 감소에 대한 변동사유 부호를 기입하며 특히 동일장소 내 사업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증가 및 감소란에 각각 코드를 부여
 - 증가 : 「1」 전입, 「2」 신규, 「3」 누락
 - 감소 : 「4」 장기휴업, 「5」 폐업, 「6」 기타(전출, 중복, 대상외 등)

⑫ 비고

- 사업체 변동 사유(2005. 11. 폐업 등)와 인터넷 조사사업체인 경우 “인터넷조사” 등과 같이 사업체의 특기사항을 기입

■ 조사구요도상 사업체가 소재하는 건물별 우측 상단에 사업체 수를 연필로 표기(☐) : ②

3 사업체일련번호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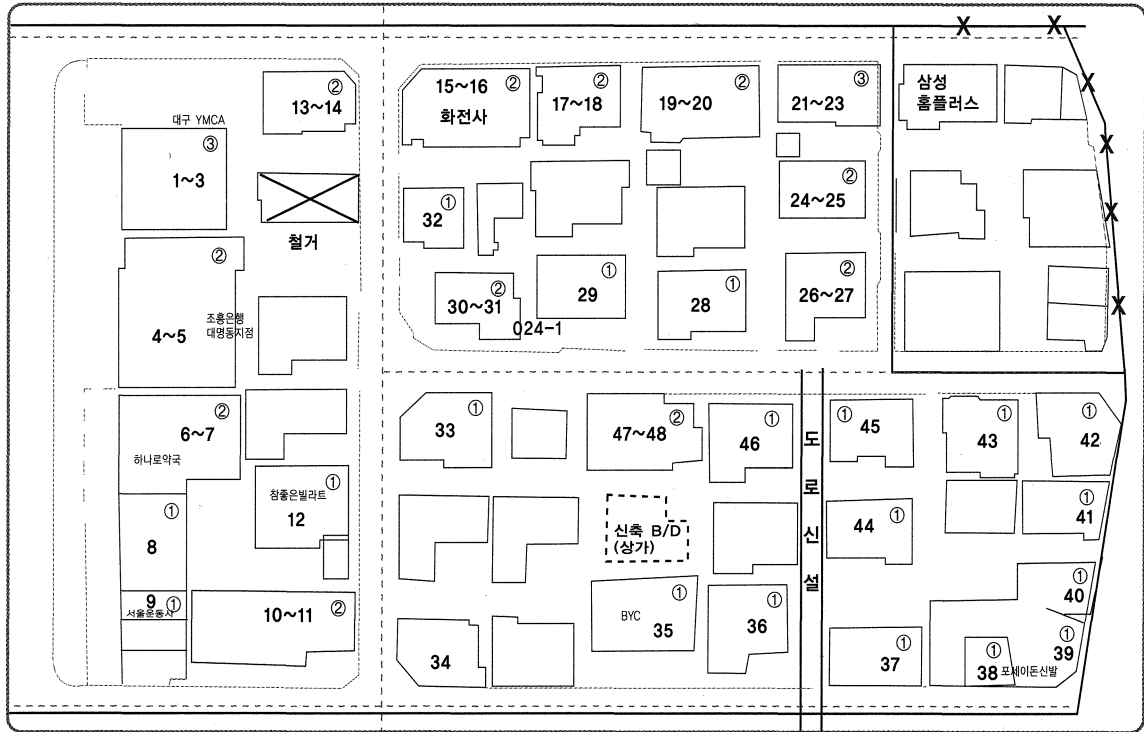
■ 조사구요도에 사업체명부상의 「① 사업체일련번호」를 해당 사업체가 소재하는 건물 내에 청색 또는 흑색볼펜으로 기입

■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사업체가 소재할 경우 해당 건축물 내 사업체의 첫번째 번호와 끝번호를 연결하여 조사구요도에 기입

☐ 13~17, 19~20, 21~28

■ 전입, 누락, 신설 등으로 사업체가 새로 생긴 경우

- 해당 조사구의 맨 마지막 사업체일련번호에 이어서 일련번호를 새로이 부여하여 조사구번호,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명 등을 사업체명부에 기입하고, 조사구요도에도 해당 사업체 소재 건축물에 사업체일련번호를 이기



4 조사협조공문(인사장)

- 인사장은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답책임자에게 전달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응답자에게 전달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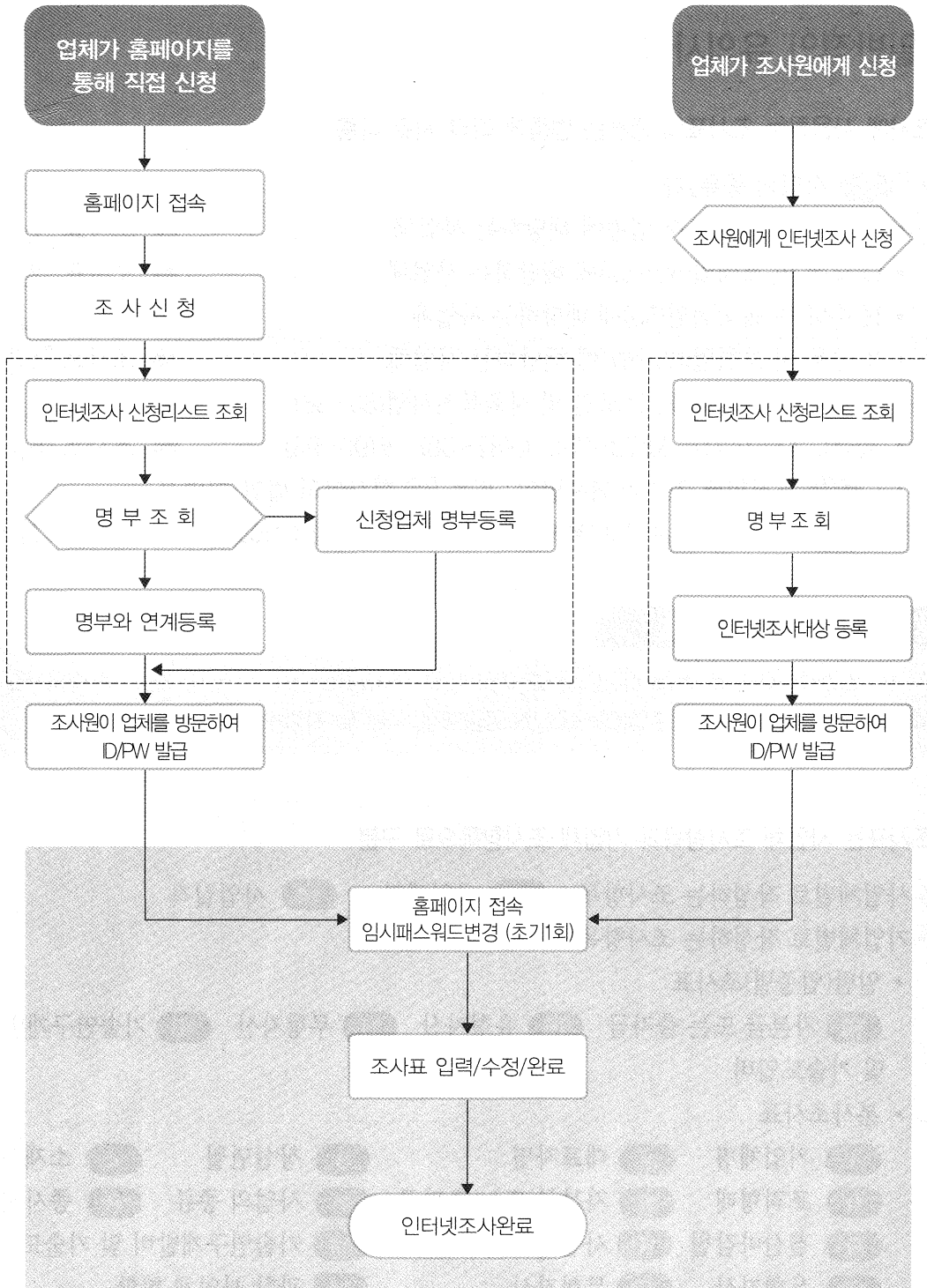
5 스티커(사업체일련번호표)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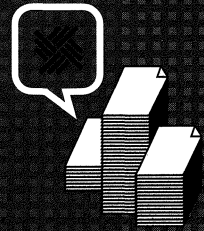
- 준비조사 시 사업체 확인이 끝난 다음 사업체 출입구의 오른쪽 상단에 부착. 이때 조사구 번호, 사업체일련번호는 기입하되 「조사여부」란은 비워두고 조사가 끝난 다음 조사여부에 적색볼펜으로 '√' 표시

6 인터넷조사

-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인터넷조사 설명서를 배부하고 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할 경우 ID/PW를 발급받아 알려주거나 응답자 본인이 인터넷 홈페이지(<http://scensus.ns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

[인터넷조사 처리절차]





Ⅰ 일반적인 유의사항

■ 조사에 사용하는 조사표의 종류는 업종에 따라 서로 다름

▶ 「 8 사업의 종류」가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표 「1」
- G 도매 및 소매업(50~52)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표 「2」
- H 숙박 및 음식점업(55)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표 「3」
- K 금융 및 보험업(65~67)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표 「4」
- O 교육서비스업(80),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 조사표 「5」
- J(64), L(70~71), M(72~75), Q(87~88), R(90~93) → 조사표 「6」
- 「 6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또는 「③ 회사이외 법인」이면서
- 「 7 사업체구분」이 「② 본사」인 모든 사업체(본사조사표) → 조사표 「7」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업종

A 농·임업(01~02), B 어업(05), C 광업(10~12), D 제조업(15~37),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F 건설업(45), I 운수업(60~63),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 조사표는 사업체 조사항목과 기업체 조사항목으로 구분

▶ 사업체별로 작성하는 조사항목 : ① 사업체명 ~ ⑭ 사업실적

▶ 기업체별로 작성하는 조사항목

• 일반(업종별)조사표

⑮ 자본금 또는 출자금 ⑯ 유형자산 ⑰ 무형자산 ⑱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본사조사표

① 기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창설년월 ④ 소재지
 ⑤ 조직형태 ⑥ 자본금 또는 출자금 ⑦ 사업의 종류 ⑧ 종사자수
 ⑨ 결산마감월 ⑩ 사업실적 ⑪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⑫ 유형자산 ⑬ 무형자산 ⑭ 관할 사업체 현황

- 기업체 조사항목 (16) 항 ~ (18) 항은 「 6 」 조직형태가 「 ② 회사법인」 또는 「 ③ 회사 이외법인」이면서
 - ▶ 「 7 」 사업체구분 「 ① 단독」인 사업체 → 업종별 조사표(2~6)에 작성
 - ▶ 「 7 」 사업체구분 「 ② 본사(점)」인 사업체 → 본사조사표(7)에 작성

-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항목은 「 6 」 조직형태가 「 ② 회사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작성(단, 조사표 1은 (11) 자본금에 작성)

- 이 조사는 지난 1년간(2005. 1. 1.~12. 31.)의 실적이 조사대상
 - ▶ 회계년도(결산 마감월)가 다른 경우 최근 1년간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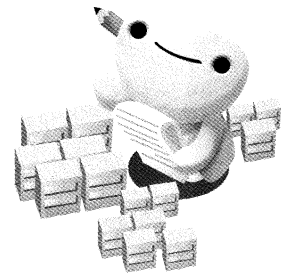
- 2006년 중에 신설한 사업체는 사업체명부상에 등재 후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
(예) 2006. 3. 신설)한 사업체는 (1) 사업체명 ~ (9) 종사자수 항목까지만 작성

- 행정구역분류부호, 조사구번호, 사업체일련번호 등 난외사항과 (1) 사업체명 ~ (8) 사업의 종류까지는 조사표에 그 내용을 사전출력(pre-print)하여 제공하므로 조사 시 **변동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색으로 두줄(=)수정·보완**
 - ▶ 조사표에 사전 출력한 내용은 2004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로써 많은 변화가 예상됨으로 조사 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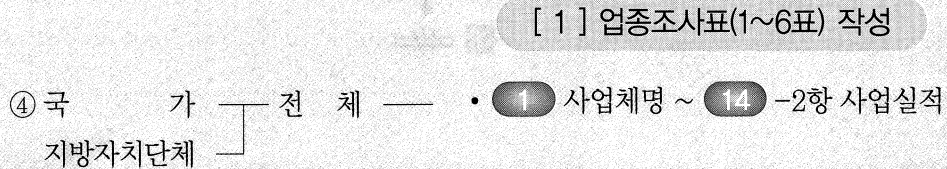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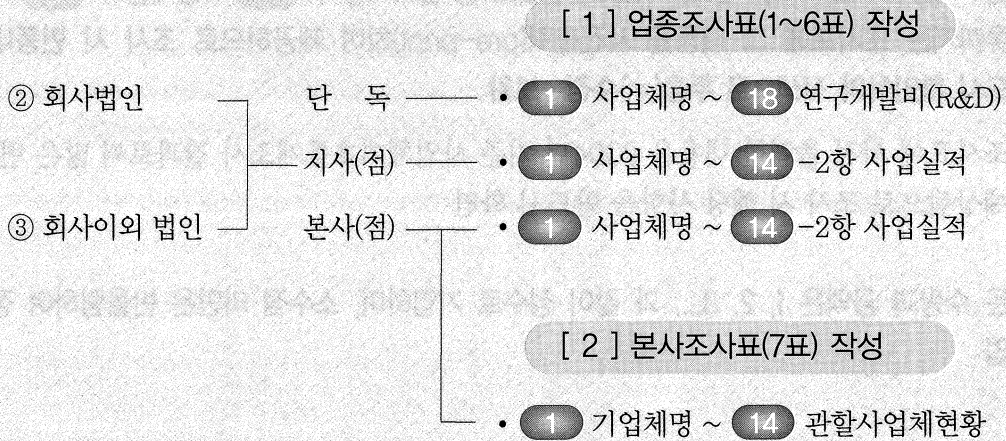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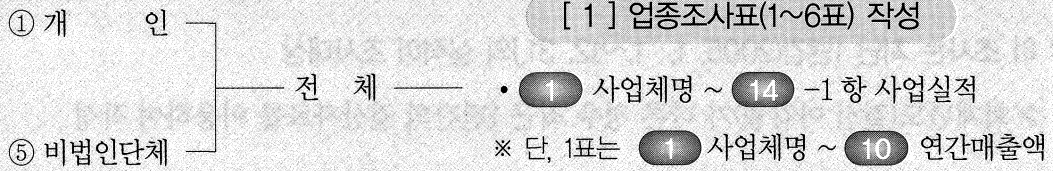
- 모든 수량과 금액은 1, 2, 3... 과 같이 정수로 기입하며,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

- 수량 또는 금액을 정정할 경우에는 정정할 숫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정정**

28
↓
예) ~~12~~



[조직형태별 조사항목 작성흐름도]



※ 노동조합, 종교, 정치, 시민운동단체의 사업실적은 ⑭ -1 항에 ② 사업비용(경상 경비)만 작성

2]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가. 난외사항

■ 행정구역분류부호

행정구역분류부호							
2	2	—	0	4	0	—	5 6

- 시·도(2) 시·군·구(3) 읍·면·동(2)

❖ 2006. 1. 1. 기준 「행정구역분류부호표」를 이용하여 7자리까지 기입

■ 조사구번호

조사구번호				
0	0	3	—	1

- 조사구번호(3) 특성부호(1)

❖ 담당 조사구 및 특성부호를 기입

- 동일 조사구 내 모든 사업체의 특성번호는 동일함에 특히 유의
- 조사구는 일반조사구(특성번호 『1』), 빌딩조사구(특성번호 『2』), 시장조사구(특성번호 『3』), 지하조사구(특성번호 『4』)가 있음

■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일련번호		
0	1	2

❖ 담당 조사구의 사업체명부상 일련번호를 기입

- 사업체일련번호는 조사구 요도 = 사업체명부 = 조사표가 반드시 일치

나. 사업체단위 조사항목

■ 1항 ~ 14항까지는 반드시 사업체별 실적을 작성 (기업체단위가 아님)

(1) 기본항목

(가) 사업체명

1 사업체명

대한제과(주)서욱지전
인터넷주소(URL) http://www.statbakery.co.kr/~abc

-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하고, 일정한 명칭이 없는 경우 대표자명, 취급 상품명 순으로 기입
- 회사법인의 경우 「등기상의 명칭+(주), (유), (합자), (합명)」형식으로 법인형태를 반드시 사업체명칭 뒤에 기입
 - ❖ (주)화승르까프 (×) ➡ 화승(주) (○)
- 지점, 분점, 영업소 등의 경우 「기업체 명칭 + 지사(점)명, 영업소」 형식으로 반드시 지사(점)명, 영업소 공장명도 기입
 - ❖ 한국생명(주) (×) ➡ 한국생명(주)대전영업소 (○)
- 각 사업체별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홈페이지 주소(URL)를 기입
 - ❖ 기업체나 본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사업체별 자체 홈페이지를 기입
(기업체나 본사의 홈페이지가 아님에 유의)
 - ❖ 만약 홈페이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대표 홈페이지 한 개만 기입

(나) 대표자명

2 대표자명	간 동 제	성 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	------------	--

-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기입(본사 대표자가 아님에 주의)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중 한 명만 기입
 - ❖ 지점, 영업소, 공장인 경우 지점장, 영업소장, 공장장명을 기입
- 대표자 성별(① 남 ② 여)의 해당 항목에 반드시 '√' 표시

(다) 창설년월

3 창설년월	1	9	4	6	년	0	9	월
---------------	---	---	---	---	---	---	---	---

- 등기일이나 장소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영업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시점을 기입

-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의 창설년월은 본사(점)의 창설시기가 아니고 그 지사 등이 현재의 영업을 시작한 시기를 말함

》》 창설년월로 보는 사유

- 현재의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때
- 개인사업체가 상속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영권을 이전시킨 때
- 조직형태가 바뀐 때
 - 회사법인 →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체 → 회사법인 등
 - ※ 단, 같은 조직형태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해당 안됨
 - 유한회사 → 주식회사 등(물적회사 → 물적회사)
-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하나로 대등 합병(병합)되었을 때
 - ※ 주의 : 흡수합병은 제외
- 자회사,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 형태의 사업체가 새롭게 개설되었을 때
- 사업내용이 산업대분류를 변화시킬 정도로 크게 변할 때
 - 소매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변경 등

》》 창설년월로 보지 않는 사유

- 상속으로 인수받은 때
- 사업체가 이전되었을 때
- 신축·개축 등으로 일시적 장소이전 후 본래의 장소에서 다시 개업하였을 때
- 폐업 후 사업체명만 변경하여 다시 영업을 개시한 때
- 화재 등 그 밖의 재해 등을 입은 후 다시 영업을 개시한 때
-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흡수·합병되었을 때 흡수한 사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0	1	-	8	1	-	2	3	0	9	4
	관할세무소			개인·법인			일련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란 세무서에서 부여한 사업체고유번호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고,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의 필수적 기입사항임

-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

일반적으로 1사업체 1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친구 또는 다른 사업자 명의를 같이 사용하는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빌려 쓰는 경우 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차 문의하고, 끝까지 없다고
 할 시 공란 처리

(라) 소재지

4 소재지	주업	읍·면·동	가·리	1002	번지	21	호	2	통	4	반
	크다		빌딩·시장·상가	1002	동	15	층	21	호		

- 사업체가 실제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현행 법정 읍·면·동, 가·리와 번지, 호수,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
- 특히, 빌딩, 시장, 상가 등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경우 빌딩, 시장, 상가의 명칭과 동·층·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마) 사업장 변동

5 사업장변동

• 해당하는 번호에 V 표를 하십시오.

- ① 사업장 존속 ② 사업장 신설 및 누락 ③ 대상외 ④ 사업장 철거 및 폐쇄

- 사업장이란 전년 또는 금년에 조사대상 사업체가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던) 장소를 말함
- 사업장 변동은 사업체의 변경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전년과 비교하여 현재 동일한 장소에 사업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로 결정함

① 사업장 존속

- 전년에 사업체가 있었던 장소에 금년에도 사업체가 있는 경우
- 조사표에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년월,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등이 출력되어 있는 경우
 - 동일 사업 장소에서 전출·입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여부와는 관계없음
- 상근종사자가 있는 휴업사업체 또는 개인사정으로 일시적인 휴업사업체
 - 6개월 이상 장기휴업으로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장 철거 및 폐쇄로 처리(단, 계절 사업체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

② 사업장 신설 및 누락

- 전년 조사시 사업체가 없었던 장소에 사업체가 새로 입주한 경우
 - 건물의 신축, 개축 등으로 사업체가 새로 입주한 경우
 - 건물은 있었으나 미입주 등으로 전년 조사 시 사업체가 없었던 장소에 금년에 새로 사업체가 입주한 장소
- 전년 조사시 누락된 사업체
- 출력조사표가 없는 사업체 즉, 본조사 시 새로 파악된 사업장의 경우

③ 대상외

-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있는 경우
 - 상근종사자가 없는 경로당·작목반·어촌계, 고정시설이 없는 노점상,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 상근종사자가 없는 휴업사업체
 - 상근종사자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휴업중인 사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① 사업장 존속)
- 출력조사표에는 사업체가 있는 장소(사업장 존속)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사업체가 없는 유령 사업체

④ 사업장 철거 및 폐쇄

- 전년 조사에서 사업체가 있었으나 금년조사에는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
 - 건물의 철거로 사업장소가 없어진 경우
 - 사업체의 폐업, 전출 등으로 사업장이 비어 있는 경우

「③ 대상외」 또는 「④ 사업장 철거 및 폐쇄」인 사업체는
사업체명부를 정리하고 여기서 조사를 종료합니다.

(바) 조직형태

6 조직형태 •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① 개인사업체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사법인	→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③ 회사이외법인		<input type="checkbox"/> 합자회사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합명회사
⑤ 비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외국회사

6-1 법인등록번호

1 1 3 2 1 1 - 3 2 4 1 2 3 5

※ 6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또는 ③ 회사이외법인만 기입

① 개인사업체

- 법인격 없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 법인이 아닌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됨
- 회사와 제품·상품 등의 판매 계약을 맺고 개인경영주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대리점, 특약점, 가맹점 등의 개인사업체
 - 예) ××전자(주) 둔산대리점, 롯데리아(주)○○점 등

② 회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외국회사를 말함
 - 외국회사란 외국(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주로 국내에 설치된 외국의 지사(점), 영업소 등으로 이루어짐
-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② 회사법인에 ' ' 하고, 회사형태(주식·합자·합명·유한회사, 외국회사)에 따라 해당란에 ' ' 표시
 - [주의] 외국회사인 경우는 회사형태에 관계없이 외국회사란에 ' ' 표시

③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함
 -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정부투자기관(공사, 지방공사, 공단 등)
 - ☞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지방공사, 강남병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조직 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무역협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정당 등
 - 농·림·수·축산업 협동조합(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 ※ 단,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 전환된 공사·공단은 회사법인 주식회사에 해당(예 : 한국가스공사(주), 한국전력(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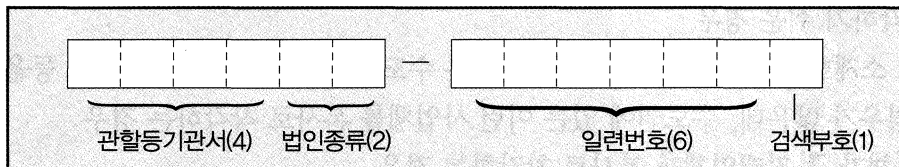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 조직 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소재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그 소속기관
 - 입법부(국회, 지방의회)
 - 사법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소속기관)
 - 국·공립학교, 국·공립의료법인
- ☞ 이 중 서비스업총조사 대상업체는 우체국, 국공립도서관, 보건소 등으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⑤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
 - 법인격의 유무는 법인등기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6-1 법인등록번호



- ⑥ 조직형태 ② 회사법인 또는 ③ 회사이외의 법인에 '✓' 한 사업체의 경우 반드시 법인등록번호를 기입
 -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설립을 위해 법원등기소에 처음 등록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은 법인번호를 말 하지만 조직형태가 변하면 법인번호도 변함
 - ※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 처음으로 설치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등기를 말함

(사) 사업체 구분

7 사업체 구분

• 해당하는 번호에 ✓ 표를 하십시오.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점)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

본 사 명 : 대항제라(주) 전 화 : (042)481-2183

소 재 지 : 대전 (시) 도 서시·군 (구)

 둔산1 읍·면 (동) 920 번지

※ ⑥ 조직형태가 ②회사법인 또는 ③회사이외법인이면서
 ⑦ 사업체 구분이 ③지사(점), 영업소, 공장인 경우 위에 본사사항을 기입

① 단독사업체(1기업 1사업체)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 「 6 조직형태가 4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사업체는 모두 ① 단독사업체로 표시
예 동대문우체국, 수유 3동사무소, 동구보건소, 서울대학교 등

② 본사(점)(1기업 다사업체)

-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로서,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 이외법인은 반드시 「본사조사표(7표)」를 추가적으로 작성
- 따라서, 하나의 기업에 본사(점)은 단 하나임

- 본사란 실제로 기획, 회계, 재무, 구매, 광고, 법무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 본사로 착각하기 쉬운 경우
 - ☞ 지방에 소재한 대형 사업체의 본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수도권에 있는 이런 사업체를 본사로 착각하는 경우
 - ☞ 협력업체가 주 거래업체를 본사로 착각하는 경우
 - ☞ 하청관계에 있는 사업체가 서로 본사로 착각하는 경우
 - ☞ 체인가맹점의 본부회사를 본사로 착각하는 경우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1기업 다사업체)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
- 따라서, 3 지사(점), 영업소, 공장에 √ 표한 사업체로서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인 경우 반드시 본사사항(본사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도 기입

(아) 사업의 종류

8 사업의 종류

• 「사업내용」은 도매, 소매, 수리, 서비스 등 사업체의 주된 사업활동을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순으로 기입하십시오.
•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은 사업 내용에 따른 생산품, 취급상품 및 영업종목을 2~3개씩 기입하십시오.

	(1) 사업 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① 주사업	주류도매업	6 2	소주, 양주 및 맥주	5 1 3 3 1
② 부사업	음료수도매업	3 8	사이다 및 콜라	5 1 3 3 2

- 조사대상 사업체가 어떤 산업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사업체의 사업내용 및 주요생산품, 취급품목, 영업종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입

(1) 사업내용

- 사업체가 영위하는 산업활동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① 주사업, 그 이외의 사업 중 매출액 비중이 다음으로 큰 사업을 ② 부사업에 기입
 -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종류)인지
 - 이들의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판매되고 있으며, 어느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입

☞ 본사(점) 등에서 관리사무만을 하고 있는 사업체, 즉 영업소·공장 등 사업체가 다른 장소에 있고 이들 사업체의 관리사무만을 하고 있는 본사·본점은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사업체의 산업활동 중 주된 사업내용을 ① 주사업에 기입하고 부차적인 산업은 ② 부사업에 기입

(2) 비중

- 지난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기입
-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 비중의 합 ≤ 100
 - 3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 비중의 합은 100%이하가 될 수 있음

(3)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품목

- 해당 사업체의 생산품, 취급품목 또는 서비스 종류의 비중(매출액 기준)이 가장 큰 순서대로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품목을 2~3개 기입
 -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여 ① 주사업과 ② 부사업을 기입한 사업체는 ① 주사업과 ② 부사업별로 각각 2~3개씩 기입

(4) 산업분류부호

- 「사업내용」 및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 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를 이용하여 해당 산업분류 5자리(산업세세분류)까지 정확하게 기입
 - 산업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조사관리자 또는 지도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결정

사업의 종류 예시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 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 부호				
① 주사업	화장품제조업		6 0	색조화장품, 세정용 화장품	2	4	3	3	3
② 부사업	포장용플라스틱성형용기제조업		2 0	병마개, 플라스틱 용기	2	5	2	3	2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 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 부호				
① 주사업	토목건축공사업		7 0	고속도로공사	4	5	1	2	1
② 부사업	철강철골을 현장에서 적대조립함		3 0	철강조립, 철골가공	4	6	1	2	4

(3) 수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 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 부호				
① 주사업	자동차중량수리(1급정비소)		8 0	승용차, 트럭, 버스	9	2	2	1	1
② 부사업	자동차 경정비(카센터)		2 0	승용차	9	2	2	1	2

(4)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 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 부호				
① 주사업	의의 도매		5 0	전퍼, 기성양복, 기성양장	5	1	4	1	3
② 부사업	선물용품 도매		4 5	모조장식구, 라이터, 연필고리	5	1	4	7	3

(5)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 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 부호				
① 주사업	한식전		5 5	김치찌개, 순두부	5	5	2	1	1
② 부사업	스넥전		3 5	커피, 샌드위치, 라면	5	5	2	2	2

(6) 보험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 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 부호				
① 주사업	생명보험		7 0	생명보험, 교육보험	6	6	0	1	0
② 부사업	부동산중개업		1 0	아파트, 단독주택	7	0	2	2	1

※ 551 숙박업 중 펜션업(Pension)

운영형태	산업분류
회원제 휴양펜션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민박 형태 관광펜션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산업분류 구분방법

① 제조하여 출하, 도매 ➡ 제조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출하 또는 도매하는 경우
-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가공업자에게 제공·가공시켜 자사 상표로 판매 하는 경우

② 제조하여 소매 ➡ 제조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판매시설을 갖추고 최종소비자에게 소량·날개로 판매 하는 경우

③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 도매 ➡ 도매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산업 사용자에게 납품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④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 소매 ➡ 소매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시설을 갖추고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특히, 유의할 산업구분

① 제과점, 떡집 등의 경우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객석을 갖추지 않고 판매 → 제조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객석을 갖추고 판매 → 음식점업
- 빵이나 떡 등을 생산자나 도매업자 등에게서 받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소매업

② 매출액에 관계없이 산업 업종이 결정되는 경우

- 우체국의 경우 매출액 중 금융수익이 더 크더라도 우편업으로 분류
- 호텔업의 경우 면세점 수익 등이 많더라도 호텔업이 주업이므로 호텔업을 주업으로 함
- 웨딩홀에서 음식점 수입이 많더라도 수익의 원천인 예식장업으로 조사
- 기타 예 : 장례식장, 극장, 테마공원 등

(자) 종사자수

9 종사자수

• 2005년 1년간 근무한 월평균종사자수를 기입하십시오.

(단위 : 명)

	(1) 자영업주	(2) 무급가족종사자	(3) 상용종사자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5) 무급종사자	(6) 합계
① 남			6			6
② 여			10			10
③ 계			16			16

■ 2005년 실제 사업기간(1. 1.~12. 31.)중에 근무한 월평균 종사자수를 종사상 지위별 및 성별로 구분하여 기입

▣ 단, 2006년도에 신규 창설한 사업체는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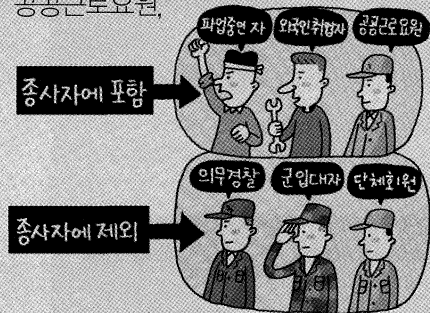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종사자에 포함되는 경우

- 월평균 정상근무일수의 1/3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사업체에 파견한 종사자 또는 용역을 준 업체에 나가 일하는 종사자
- 병가자, 단기휴가자, 파업중인 자, 외국인 취업자, 공공근로요원, 종교단체 봉사자 중 상시적으로 봉사하는 자 등

종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 결근자, 근무 중 군입대자,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봉사단체의 1일 봉사요원, 각종 단체의 회원, 종교 단체의 신자
- 무급 비상근임원, 파견 받은 근로자,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청소부, 경비원 등)
- 월평균 정상근무일수의 1/3미만 업무에 종사한 자 등



※ 월평균 종사자수 계산 방법

예제) 영업 개월 수가 6개월이고 영업월과 종사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영업월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계
종사자수(명)	16	18	15	14	19	16	98

• $(16+18+15+14+19+16) / 6 = 16.3$ 반올림하면 ∴ 16명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1) 자영업주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는 경영자 모두 자영업주로 조사
- 「자영업주」에 1명 이상이 조사되면 반드시 6 조직형태는 「① 개인사업체」임

(2)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업무에 종사하며 임금 또는 급여를 받지 않는 자
- 임금 또는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일 종사자에 포함

(3) 상용종사자

-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고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일컫는 자)
 -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상용종사자임
- 유급 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 감사 등)은 포함되나, 무급 비상근임원인 경우는 조사대상이 아님
-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는 임시 및 일일종사자에 포함(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 고용주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거나 일일단위로 고용된 자
- 일반적으로 임시, 일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자
-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 건설현장의 노무자 등 일일 종사자는 해당 업체에서 응답한 내용이 연인원인지를 반드시 질의하여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
 - 연인원(延人員)이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과 소요된 일수를 두고, 그 일을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총인원수(30명이 40일 일했으면 연인원은 1,200명)

(5)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 지급받는 자동차·보험 설계사 등
-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고객의 팁(봉사료)을 받고 종사하는 호스티스, 접대부, 목욕관리사 등
- 개인등록사업자라 할지라도 실적급 또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며 지사, 영업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지사나 영업소 등의 무급종사자로 조사



2006년 신규 창설한 사업체는 사업체명부를 정리하고
여기서 조사를 종료합니다.

(차) 영업기간

10 **영업기간**

• 2005년 1년간 영업한 개월 수를 기입하고 해당하는 월평균 휴무일수에 √ 표를 하십시오.

(1) 연간 영업 개월수		(2) 월평균 휴무일수						
1	2	개월	① 1일	② 2~3일	③ 4~5일	④ 6~7일	⑤ 8일 이상	⑥ 휴무일 없음

(1) 연간 영업 개월수

- 2005. 1. 1. ~ 12. 31. 기간 중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개월 수
- 영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여도 1개월로 기입. (예) 12일 영업 → 1개월

(2) 월 평균 휴무일수

- 2005. 1. 1. ~ 12. 31. 기간 중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업체의 정상 휴무 일수를 월 평균으로 기입
- 1시간이라도 영업을 한 날은 영업일수에 포함
- 예 2005년도에 정상 휴무일수가 96일이었고 영업월수가 12개월이었다면
 - 연간 영업개월수 : 12개월
 - 월평균 휴무일수 : 8일(96일/12개월)
- 국경일, 명절, 경조사, 창립기념일 등으로 인한 부정기적인 휴무일은 제외

(카)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11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 2005. 12. 31. 현재 PC 보유대수를 기입하고 정보기술 활용 여부를 해당란에 √ 표를 하십시오.

(1) 업무용 PC보유 여부	(2) PC 보유 대수	(가) 인터넷접속 PC 대수	(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	(4) 전자상거래 활용 여부	
	① 없음 ② 있음	2	2	① 개 설 ② 미 개 설	① 판매 및 구매 ② 판 매 ③ 구매 ④ 없음

(1) 업무용 PC보유 여부

- 2005. 12. 31.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PC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표시하고 「② 있음」에 √ 표시한 경우 해당사업체의 「(2) PC보유대수», 「(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 「(4) 전자상거래 활용 여부」를 조사

(2) PC 보유대수

- 2005. 12. 31.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대수를 말하며 PC에는 486이하, 펜티엄, 펜티엄II, 펜티엄III 이상 급의 PC, 노트북 등을 포함
 - 학교, 학원의 실습 및 강의용 PC도 포함

(가) 인터넷접속 PC 대수

- 보유 PC 중에서 인터넷에 접속된 PC 대수를 기입
 - 사내 네트워크에만 연결하여 사용하는 PC(금융기관의 단말기 등)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인터넷이란?
 - 전세계의 통신망간에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원격접속, 전자우편, 파일 전송, 월드와이드웹 등이 가능한 것을 말함

(3)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여부

- 사업체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여부에 따라 해당란에 √ 표시
- 「**1** 사업체명」에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홈페이지 구축 여부에도 개설에 √ 표시되어야 함

(4) 전자상거래 활용 여부

- 전자상거래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입찰/계약 등의 거래가 컴퓨터통신망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2005년 1년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또는 구매활동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 ※ 컴퓨터통신망은 TCP/IP기반의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뿐만 아니라 TCP/IP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전용선 등 모든 컴퓨터통신망을 포함
 - 전자상거래는 자사의 전자상거래사이트와 타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e-market place(B2B), 정부(공공)기관의 전자조달 시스템, 기업체의 판매 또는 구매 시스템 등에서 발생함
- 전자상거래는 B2B(기업과 기업), B2C(기업과 소비자), B2G(기업과 정부), e-market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구매/판매/중개 활동임
 -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EDI 거래(엑스트라넷 혹은 전용선 등의 컴퓨터 통신망)도 주문이 컴퓨터통신망에서 이루어질 경우 전자상거래에 해당

전자상거래가 아닌 경우

- … 배송(다운로드 등 전자배송)이나 지불(전자화폐, 온라인뱅킹 등 전자기부)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졌어도 주문이 컴퓨터 통신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상거래가 아님
- … 사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상품 카달로그 및 설명서/가격표 등을 보고 전화/팩스/일반적인 e 메일로 주문한 경우 주문이 컴퓨터통신망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자상거래가 아님

(타) 사업장 건물면적

12 사업장 건물면적

• 2005. 12. 31. 현재 사업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기입하십시오.(3.3㎡ = 1평)

(단위 : 평)

	① 소유		② 임 차		③ 무 상		④ 합 계	
건물면적				50				50

■ 2005. 12. 31. 현재 사업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평(3.3㎡=1평)으로 환산하여 기입

※ 연면적이란 사업체가 사업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으로서 지하, 지상층 등 건물의 모든 면적을 합친 전체면적을 말함

- 별도의 장소에 있는 물류창고는 그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의 건물면적에 포함
- 자사 소유의 건물이라 하여도 남에게 빌려준 면적과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되, 사업을 위해 남에게서 빌린 건물면적은 포함

사업장 건물면적에 포함하는 경우

- 계단,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포함), 연결통로(구름다리, 지하도, 현관출입통로 등)
- 동일 건물 내의 문화행사시설
- 회의실, 사무실, 종업원이용시설, 소비자편의시설(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옥내주차장 등)
- 상품반입장, 기계실 등

■ 2005. 12. 31. 현재 소유, 임차, 무상 등 소유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입

- ① 소유 : 사업체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사 소유의 건물면적
- ② 임차 : 사업체가 사업을 위해 임차계약(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포함)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
- ③ 무상 : 사업체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남의 건물면적
- ④ 합계 : ① 소유 + ② 임차 + ③ 무상

(2)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특성항목

(가) 상품매입처별 구성비(도소매업)

13-1 상품매입처별 구성비

• 2005년 1년간 연중 상품매입액에 대한 매입처별 구성비 (매입처별 상품매입액/연중 상품매입액×100) (단위 : %)

① 본지점간 이동	② 생산업자	③ 도매업자	④ 해외수입	⑤ 기타	⑥ 구성비(%)
20	30	50			100

■ 2005년(2005. 1. 1.~12. 31.) 중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총액(매출원가의 연중 상품매입액)을 매입처별로 분류하고 그 비율을 기입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

■ 상품매입처별 구성비 산출식

매입처별 상품매입액/연중 상품매입액×100

❖ 각 구성비의 합계는 100(%)이 되도록 함

① 본지점간 이동

- 해당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직계 지점 상호간의 상품이동액이 총상품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직접적인 대금결제 없이 기업내부로만 회계처리하고 상품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본지점간 이동에 해당

예

- 동일 기업체내의 본지점간 이동



- 동일 기업체의 지점 상호간 이동



- 동일 기업체의 타 장소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장부상 상품을 대체



② 생산업자

- 동일 기업이 아닌 다른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품 매입액이 총 상품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제조·도매업체 등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하청공장과 같은 생산업자에게 제공하고 위탁가공을 시켜 생산된 상품을 인수한 경우도 해당됨. 이 경우 상품매입액의 평가는 제조원가(원재료비+ 위탁생산비)를 기준으로 함
 - 법인격이 다른(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대기업 계열사 생산업자로부터의 구입은 '본지점간 이동' 이 아니라 '생산업자' 에 해당함에 유의

③ 도매업자

- 도매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품 매입액이 총상품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제조업체의 영업소, 무역상, 중개상 등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

④ 해외수입

- 중개상이나 무역상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한 상품매입액이 총 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해당사업체 명의로 직접 통관되어 수입된 경우만 해당됨
 - 국내에 있는 외국상사에 주문하여 상품을 수입한 경우, 해당사업체 명의로 통관되지 않는 한 해외수입을 통한 상품구입으로 볼 수 없음
 - 무역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업자의 명의로 통관되어 수입된 경우에는 '도매업자' 로부터 구입에 해당
 - 외국에 있는 해당 사업체의 타지점으로부터 매입했을 경우에는 '본지점간 이동' 이 아닌 '해외수입' 에 해당

⑤ 기타

- 위 4가지 매입처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매입액이 총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가정집으로부터 수집한 폐품·재활용품, 소매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폐업사업체의 처분상품, 채권변제로 받은 상품, 기증품 등이 해당

(나) 상품판매처별 구성비(G 도소매업)

13-2 상품판매처별 구성비

• 2005년 1년간 연중 매출액에 대한 판매처별 구성비(판매처별 상품매출액/ 연간 상품매출액×100)
(단위 : %)

① 본지점간 이동	② 도매업자	③ 소매업자	④ 생산업자	⑤ 기타 산업사용자	⑥ 일반 소비자	⑦ 해외수출	⑧ 구성비(%)
		20			80		100

■ 상품판매처의 구분은 판매한 상품을 형식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체가 아닌, 직접 상품판매를 계약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분류

■ 상품판매처별 구성비 산출식

$$\text{판매처별 상품매출액} / \text{연간 상품매출액} \times 100$$

■ 각 구성비의 합계는 100(%)이 되도록 함

① 본지점간 이동

- 해당 사업체의 본점 또는 타 지점에 판매한 상품매출(판매)액이 연간 상품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직접적인 대금결제 없이 기업내부로만 회계처리하고 상품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본지점간 이동에 해당
 - 동일 기업내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점에 대하여 회계상 상품대체를 행할 경우는 “소매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본지점간 이동”으로 분류

② 도매업자

- 해당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다른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연간 상품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소매업자

- 해당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연간 상품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④ 생산업자

- 동일 기업이 아닌 다른 생산업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한 금액이 연간 상품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고물상이 재생용지, 폐품 등을 수집하여 가공업체에게 판매한 경우
 - 라이터, 재떨이 등을 판촉물가공업체에게 판매한 경우 등

⑤ 기타 산업사용자

- 도·소매업자 및 생산업자 이외의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연간 상품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산업사용자는 해당 사업체 상품을 재판매하기 위함이 아닌 산업용(업무용)으로 매입하는 사업자를 말함

예 건설업, 음식점, 숙박업, 병원, 학교, 관공서 등 산업용(업무용)으로 판매

- 업무용으로 필요한 설비(사무용 기계, 진열대 등) 등을 타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아닌 “산업용 사용자”로 분류
- 운송사업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⑥ 일반소비자

-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연간 상품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⑦ 해외수출

- 해외에 직접 수출한 상품판매액이 연간 상품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해당사업체 명의로 통관되어 직접 수출한 경우만 해당됨
- 국내에 있는 외국상사 또는 무역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그 사업체 명의로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도매업자’로 분류
- 외국에 있는 해당기업체의 지점에 수출한 경우는 ‘본지점간의 이동’이 아닌 ‘해외수출’로 분류

(다) 객실(석)수(55 숙박·음식점업)

13-1 객실(석)수

(단위 : 실, 석)

	만	천	백	십	일
① 객실수 (551 숙박업만 해당)				5	0
② 객석수 (55111 호텔업·552 음식점업만 해당)					

• 2005년 12. 31. 현재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객실 수 또는 객석 수를 기입하십시오.

■ 2005. 12. 31. 현재 숙박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며 사용 중인 객실수 및 객석수를 모두 기입
※야외 객석수도 포함

- 객실 수(551 숙박업만 기입)
 -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 객실 수를 기입
 - 주인이나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객실은 제외

- 객석 수(55111 호텔업, 552 음식점업만 기입)
 - 호텔의 식당 및 음식점에서 접객용으로 수용 가능한 총 객석수를 기입
 - ☞ 방안에 좌석은 없고 식탁만 있는 경우에도 수용 가능 인원수로 기입
 - ☞ 접객용이라면 옥외에 설치한 식탁의 수용가능 좌석도 포함

(라) 체인점 가입여부(52 소매업 및 552 음식점업)

13-3 체인점 가입 여부

① 가입하지 않음
 가 입 함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
 볼런터리 체인(임의연쇄점) 가맹점

■ 2005년 사업기간에 프랜차이즈 체인 또는 볼런터리 체인(임의연쇄점) 중 어느 한 곳에 가입하여 사업을 경영 중에 있는 경우 「② 가입함」에 표시하고, 독립적인 운영 등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① 가입하지 않음」에 표시함

■ 「② 가입함」에 표시한 사업체는 가입한 체인점 운영형태 「㉑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 또는 「㉒ 볼런터리 체인(임의연쇄점) 가맹점」중 한 곳에 다시 표시함

■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이란 사업체(프랜차이지)가 본부회사(프랜차이저)와 계약을 체결(가맹)하고 일정한 로열티(특약료)를 본부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상표·고유마크의 사용권, 교육, 경영관리의 노하우 및 동일 상품 등을 제공받아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하며 편의점, 치킨·햄버거·피자·커피 전문점 등이 있음

-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 체결을 위한 구성요소

- 상표·상호 사용료, 제품판매권, 경영지도, 광고, 기술개발 등에 대한 로열티(가입비)를 본부회사에 지불
- 원부자재 예치금 등의 물품보증금을 본부회사에 지불(계약종료 후 환불)
- 본부회사는 주방용품, 간판, 탁의자 등 설비 및 집기류 등을 제공
- 조명, 바닥, 주방, 냉난방기, 전기승압, 셔터, 배관, 외관, 도시가스 공사 등 각종 실내 구조물 설치 및 공사에 관한 비용은 사업체가 별도 부담

-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됨

■ 볼런터리 체인(임의연쇄점) 가맹점이란 동일 업종을 경영하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공동 설립한 회사(연쇄화 사업본부 등)를 중심으로 공동선전, 구매, 배송, 매출 등을 하며 공동사업에 가맹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하며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 등에 주로 있음

❖ 직영점(레귤러 체인)은 「① 가입하지 않음」에 √ 표를 하십시오.

(마) 매장면적(52 소매업)

13-4 매장면적 • 2005. 12. 31. 현재 사업을 위한 직영매장 면적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준 매장면적을 기입하십시오. (3.3㎡ = 1평) (단위 : 평)

① 직영 매장면적(특정매입매장 포함)		② 빌려준 매장면적		③ 합 계	
	5 0				5 0

❖ 2005. 12. 31. 현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건물면적 중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장의 건물연면적을 기입

※ 직영매장면적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사업체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매장 면적을 말하며, 빌려준 매장면적은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포함)를 받고 자신의 사업장을 남에게 빌려준 면적을 말함

- 백화점, 할인점 등의 특정매장면적은 직영면적에 포함
- 직영 매장면적 ≤ 건물연면적

(3) 서비스업부문 특성항목

(가)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64 통신업, 72~75 사업서비스업)

13-1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 • J 통신업(64) 및 M 사업서비스업(72~75)에 속하는 사업체로서 연구·기술직 종사자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명)

(1) 직종별 종사자수		(3) 합 계 (직종별=학력별)	(2) 학력별 종사자수		
① 연구 직	② 기술 직		① 전문대 이하	② 대 학 교	③ 대학원 이상
5	10	15	5	6	4

❖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J 통신업(64) 및 M 사업서비스업(72~75) 사업체의 종사자 중 연구직과 기술직 종사자 수를 대상으로 기입

- 사무직 및 관리직에 속하는 종사자는 제외

(1) 직종별 종사자수

① 연구직

- 제품 등의 기술개발·연구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소 및 일반 부서의 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직종이 구분되는 종사자

② 기술직

- 사업체의 기계 및 장비 관리나 유지 보수 등을 위해 기술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직접 연구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장비의 보수, 관리만 하는 자는 기술직으로 분류

(2) 학력별 종사자수

① 전문대 이하

- 교육부에 정식 등록된 4년제 미만의 학력과정을 졸업한 경우로서 고졸 등 전문 학사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를 모두 포함
 - ☞ 4년제 대학교를 중퇴, 재학 등의 사유로 학사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자는 전문대 이하에 포함

② 대학교

-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경우로서 학사학위(전문학사 제외)를 소지한 자를 기입하며 대학교를 수료한 자도 포함

③ 대학원 이상

-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를 기입
 - ☞ 대학원을 중퇴, 재학 등의 사유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지 못한 자는 대학교에 포함

(3) 합계

- (1) 직종별 종사자 : ① 연구직 + ② 기술직
- (2) 학력별 종사자 : ① 전문대 이하 + ② 대학교 + ③ 대학원 이상

(나) 교육시설(80 교육서비스업)

13-1 교육시설

• 2005. 12. 31. 기준

① 학급(학과, 강의실)수	② 재적학생수(명)	③ 교원(강사)수(명)
20	400	20

- 80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 학급(학과, 강의실)수: 대학은 학과, 학원은 강의실 수
- 재적학생 수 : 등록학생수
- 교원(강사)수 : 시간강사는 제외

■ 80 교육서비스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가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학급 수, 재적학생수, 교원(강사) 수를 기입

① 학급(학과, 강의실)수

-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실제 편성되어 있는 학급수를 기입
 - 대학(교) 이상의 경우 학과 수, 초·중·고교는 학급 수, 사설학원은 강의실 수를 기입하며, 주·야간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각각 별개의 학급으로 구분

② 재적학생수

-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를 기입
 - 휴학 또는 유기정학 중인 학생이나 일시 결석한 학생 등은 포함하되 퇴학 및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 등은 제외
 -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의 온라인 수강생은 재적학생 수에서 제외
 - 사설학원은 등록된 수강생 수를 기입하되, 1인 수강생이 같은 학원에서 여러 단과를 수강하는 경우 수강생 수는 1인으로 산정

③ 교원(강사)수

-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기간제 교사는 포함), 강사(전임강사 이상), 교수(조교수 이상) 등을 기입하며 휴직자는 포함
 - 시간강사는 교원(강사)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9 종사자수에는 포함
 - 조교,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대우교수, 객원교수는 제외

(다) 병·의원 입원시설(8511~8512 병·의원)

13-2 병·의원 입원시설

- 8511 병원 및 8512 의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 2005. 12. 31. 기준

- ① 병실이 없다
- 병실이 있다

㉠ 병실수(개)	㉡ 병상수(개)	㉢ 입원 환자수(명)
26	78	72

■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8511 병원 및 8512 의원에 속하는 사업체의 입원시설을 기입

- 환자 입원치료 등을 위한 병실의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표시하고, 「② 병실이 있다」에 표시한 경우 해당사업체의 병실수, 병상수 및 입원환자수를 기입
 - 8513 공중보건의료업, 8519 기타 의료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해당란은 「\」처리

① 병실수

-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입원환자가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방수
 - 수술실, 회복실, 물리치료실 등은 병실수에서 제외
 - 처치실, 수술실, 의사나 간호사를 위한 공간, 배선실 등은 제외
 - 1인용 ~ 6인용 등 병상수와는 관계없이 모두 1실로 기입

② 병상수

- 병원의 환자를 위한 침대 설치 수를 기입

③ 입원 환자수

-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입원 중에 있는 환자 수를 기입

- 수술실, 회복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치료자로서 입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

※ 일반병실(병상), 중환자병실(병상), 특수병실(병상), 인큐베이터는 위 모두에 해당. 단, 응급실은 병상수에만 포함

(라) 사회복지 수용시설(86 사회복지사업)

13-3 사회복지 수용시설

- 86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 2005. 12. 31. 기준

① 수용시설이 없다

수용시설이 있다

㉠ 방수(개)	㉡ 수용가능인원(명)	㉢ 현재 수용인원(명)
30	150	125

■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86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수용시설을 기입

-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표시하고, 「② 수용시설이 있다」에 표시한 경우 해당사업체의 방수, 수용 가능 인원, 현재 수용인원 등을 기입

㉠ 방수

- 침대방 또는 온돌방 등을 불문하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 싸여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자 등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방수를 기입
- 수용관리자를 위한 시설이나 부엌, 화장실 등 기타 시설은 제외

㉡ 수용 가능인원

- 2005. 12. 31. 현재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자 등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기입

㉢ 현재 수용인원

- 2005. 12. 31. 현재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자 등 수용자 인원수를 기입

(마) 경기·오락시설(883 경기·오락 및 889 기타오락관련 산업)

13-2 경기·오락시설

• 아래 업종(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산업분류	88331	88332	88392	88393	88394	88911	88912	88913	88994
업종	① 골프장	② 스키장	③ 수영장	④ 볼링장	⑤ 당구장	⑥ 전자게임장	⑦ 컴퓨터게임방	⑧ 노래방	⑨ 기원
단위	홀	슬로프	레인	레인	대	대	대	대	면
				12					

■ 2005. 12. 31. 현재 기준으로 883 경기·오락 및 889 기타 오락관련 산업(9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및 오락 시설을 기입

- 경기 및 오락 시설관련 9개 산업(산업세세분류)

• 골프장(88331), 스키장(88332), 수영장(88392), 볼링장(88393), 당구장(88394), 전자 게임장(88911), 컴퓨터 게임방(88912), 노래방(88913), 기원(88994) 등

■ 업종별 단위에 맞게 환산하여 기입

① 골프장(홀)

- 보통 골프장 잔디에 갖추어진 홀(hole, '구멍')수를 말하며, 2005. 12. 31. 현재 사업을 위해 갖추어진 전체 홀수를 기입

② 스키장(슬로프)

- 슬로프(slope)는 스키장의 면을 말하며 2005. 12. 31. 현재 사업을 위해 갖추어진 폭 30m이상, 길이 300m이상의 슬로프 면수만을 기입

③ 수영장(레인)

- 2005. 12. 31. 현재 사업을 위해 갖추어진 25m 이상의 레인 수만을 기입

③ 볼링장(레인)

- 2005. 12. 31. 현재 사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레인의 수를 기입

④ 당구장(대)

- 2005. 12. 31. 현재 사업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당구대 수를 기입(4구, 포켓볼 구별 없음)

⑤ 전자게임장(대)

- 2005. 12. 31. 현재 사업을 위해 전자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게임기 대수를 기입

⑥ 컴퓨터 게임방(대)

- 2005. 12. 31. 현재 사업을 위해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게임기 대수를 기입하되 카운터에 설치한 사무용 PC 등은 제외

⑦ 노래방(대)

- 2005. 12. 31. 현재 사업을 위해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 대수를 기입

⑧ 기원(면)

- 현재 사업을 위해 바둑판을 놓고 대국을 할 수 있는 기본단위면적을 면(1면 : 약 1.5m²)이라 하며 사업체의 전체 면수를 기입

(4) 사업실적

(가) 14-1 사업실적(모든 업종 공통)

6 조직형태가 ① 개인사업체 또는 ⑤ 비법인단체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노동조합(912), 종교·정치단체, 시민운동·기타 회원단체(919)는 14-1 항 ② 영업비용(경상경비)만 조사

14-1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 및 소요비용(영업이익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총판매액						7	5	1
②	영업비용	㉗ 연중상품매입액 + 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② 영업비용						6	6	6
	㉗ 연 중 상 품 매 입 액	2005년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매입총액						6	2	5
	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㉙ 인건비 + ... + ㉚ 기타 경비 = 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4	1	
	㉙ 인 건 비	급여(보급, 수당, 상여금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합산						2	4	
	㉚ 임 차 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비용총액						1	0	
	㉛ 세 금 과 공 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치세 등은 제외)								2
	㉜ 기 타 경 비	㉙ 인건비~㉚ 세금과 공과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5
③	영업이익	① 매출액 - ② 영업비용 = ③ 영업이익						8	5	
④	연 말 상 품 재 고 액	2005. 12. 31.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재고액						3	1	1

■ 14-1 항은 6 조직형태가 ① 개인사업체 또는 ⑤ 비법인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작성하는 항목임(공통)

■ 2005년 1년간(1. 1.~12. 31.)의 사업실적(매출액과 사업비용)을 사업체별로 각각 작성

① 매출액(영업수익·사업수익·운영수익 등)

- 2005년 1년간 직접 사업활동(상품,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매출(수익)총액을 기입
 - 상품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기타경비 등 모든 경비가 포함된 금액총액으로 기입하되, 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 상품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유형
 - ☞ 대금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였을 때
 - ☞ 할부판매 또는 상품권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였을 때
 - ☞ 자가소비한 상품대금
 - ☞ 물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때
 - ☞ 건물, 토지 또는 기계장비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을 때
 - ☞ 보건업의 의료비 수입, 학교 수업료(등록금) 수입, 수리업의 수리비 수입 등
 - ※ 일반 업종에서 임대수입, 수입이자 등은 영업수익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수익, 금융업의 이자수익 등은 해당 업종에서 당연히 영업수익임
- 사업체기초통계 조사표(조사표 1)의 10항 연간매출액은 창설년도가 2005년 이전이면 모두 작성

② 영업비용(사업비용)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 매입 등을 위해 지불한 연중상품매입액(매출원가)과 판매와 일반관리를 위해 지불한 경비 총액을 합산하여 기입
 - 영업비용 = ㉓ 연중상품매입액 + 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912 노동조합, 919 기타 회원단체(종교·정치·시민운동단체 및 기타회원단체)는 경상경비(사업비용)만 조사(「조사표 6」)
- 위 경상경비만 조사된 자료는 매출액에 동일하게 계상 및 영업이익의 “0”으로 처리

㉓ 연중상품매입액(G 도매 및 소매업이 해당)

- 2005년 1년간 사업체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제품)매입총액

㉔ 재료구입비(H 숙박·음식점업, L 중 부동산·임대업, R 중 수리업이 해당)

- 2005년 1년간 사업체가 음식물 조리, 수리 등을 목적으로 매입한 재료구입비 총액

㉕ 금융·보험비용(K 금융 및 보험업이 해당)

- 2005년 1년간 사업체가 금융 및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한 비용 총액
 - ☞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보험금비용, 환급금비용, 책임준비금 전입액 및 재보험료, 상품유가증권처분, 배당금비용 등 기타 금융·보험비용

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2005년 1년간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관리와 유지를 위해 지불한 제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영업과 관련하여 매입·매출활동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인건비, 임차료 등 제 경비가 모두 포함

㉕ 인건비

- 종업원에게 지불한 급여, 노임,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 현물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가로 환산하여 기입

㉖ 임차료

- 지난 1년간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他人)의 토지, 건물, 장비 등을 임차 사용하고 대가로 지불한 비용총액

㉗ 세금과 공과

-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분으로 납부한 각종 세금, 공과금 및 범칙금 총액
 - 사업소세, 재산세, 면허세, 인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
 -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비, 동업자단체 부담금 등
 - 벌금, 과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과태료 등
 - ☞ 소득세, 납부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제외
 - ☞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수도광열비로 기타 경비임에 유의

㉘ 기타 경비

- ㉑~㉗ 항목을 제외하고 수도광열비, 수리수선비, TV시청료, 전기가스료, 잡비, 도서인쇄비, 접대비 등 나머지 경비를 모두 합산하여 기입

③ 영업이익

- ① 매출액 - ② 영업비용 = ③ 영업이익
 - 영업손실(적자)이 발생하면 「-」부호를 금액 앞에 표기

④ 연말상품재고액(G 도매 및 소매업이 해당)

- 2005. 12. 31.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재고액(구입원가 또는 시가)
- 자가 창고 등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운송중에 있는 매입 상품은 포함)
- 남에게 판매 위탁한 상품을 포함하되, 위탁받은 상품은 제외



(나) 14-2 사업실적(업종별 사업실적)

6 조직형태가 ②회사법인, ③회사이외법인 및 ④국가·지방자치단체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G 도·소매업 사업실적』

14-2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 및 소요비용(영업이외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	출	액	② 상품매출액+...+④ 기타 영업수입액 = ① 매출액							2	8	8	9	0	
	② 상	품	매	출	액	2005년 1년간 상품매출총액(특정매입매장 매출액 포함)				2	3	4	0	0	
	④ 수	수	료	수	입	타인의 상품을 대리판매 또는 중개하고 얻은 수수료 수입액				5	3	6	0		
	④ 기	타	영	업	수	입	② 상품매출액 ④ 수수료수입액 이외의 영업수입액				1	3	0		
② 영	업	비	용	② 매출원가 + ④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② 영업비용							2	1	7	2	0
	② 매	출	원	가	직영상품매출원가+특정매장매출원가=매출원가 ① 연초상품재고액 + ③ 연중상품매입액 - ⑤ 연말상품재고액				1	3	5	0	0		
	① 연	초	상	품	재	고	2005.1.1.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재고액				7	9	0	0	
	③ 연	중	상	품	매	입	2005년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매입 총액				1	3	4	0	0
	⑤ 연	말	상	품	재	고	2005.12.31.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재고액				7	8	0	0	
	④ 판	매	비	와	일	반	관	리비 ⑥ 급여총액+...+⑩ 기타 경비(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의 동일항목은 합산)				8	2	2	0
	⑥ 기	여	총	액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3	5	0	0			
	⑩ 퇴	직	기	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	2	0	0			
	⑥ 복	리	후	생	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7	0	0				
	⑩ 임	차	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비용총액				8	5	0					
	⑩ 세	금	과	공	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2	0	0				
	⑩ 감	가	상	각	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1	1	0				
	④ 대	손	상	각	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3	5	0				
	⑩ 기	타	경	비	⑥ 급여총액~⑩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1	3	1	0			
③ 영	업	이	익	①매출액 - ② 영업비용 = ③ 영업이익							7	1	7	0	

14-2 항은 6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③회사이외의 법인 또는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작성하는 항목임(공통)

2005년 1년간(1. 1.~12. 31.)의 사업실적(매출액과 사업경비)을 사업체별로 각각 작성

-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특정매장의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백화점 등의 직영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합산하여 기입

① 매출액

- 2005년 1년간 직접 사업활동(상품,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수익)총액을 기입(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 매출액 중 도·소매 이외의 다른 산업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타영업수입액에 포함하여 기입

- 매출액 = ㉗ 상품매출액 + ㉘ 수수료수입액 + ㉙ 기타 영업수입액

② 영업비용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 매입에 투입한 매출원가와 판매와 일반관리를 위해 지불한 비용 총액을 합산하여 기입

• 영업비용 = ㉗ 매출원가 + 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㉗ 매출원가

• 지난 1년간 영업활동을 위해 상품매입비 등 매출액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 매출원가 = ㉑ 연초상품재고액 + ㉒ 연중상품매입액 - ㉓ 연말상품재고액

㉑ 연초 상품재고액

- 2005. 1. 1. 현재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품(제품) 재고액

㉒ 연중 상품매입액

- 2005년 1년간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제품) 매입총액

㉓ 연말상품 재고액

- 2005. 12. 31. 현재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제품) 재고액

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여기서 인건비, 지급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제 경비가 모두 합산되어야 됨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㉔ 급여총액 + ... ~ ... + ㉕ 기타 경비

㉔ 급여총액

- 지난 1년간 고용근로자에게 급여, 노임, 잡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으로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입

• 현물급여는 시가로 환산하여 합산

㉕ 퇴직급여

- 지난 1년 중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자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당해연도의 퇴직금과 퇴직급여를 기입

㉔ 복리후생비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장학금, 경조비, 식대보조비, 의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피복비, 종업원신체검사비, 체육행사비 등 총액을 기입

※ 주요 복리후생비 항목

구 분	주 요 항 목
법정복리 관련비용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
복리시설 관련비용	병원, 학교, 식당, 사택, 기숙사 등 종업원을 위한 시설의 운용비 중 법인의 부담분,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등
의료 관련비용	의약품구입비, 정기건강진단료, 의무실유지비 등
친목활동 관련비용	서클활동지원비,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야유회비 등
경조사 관련비용	축의금, 조의금 등
소모품 관련비용	피복비, 다과비, 선물비, 기타소모품 등
식사 관련비용	야근식비, 휴일근무식비, 간식비, 회식비, 음료수비 등
기타 관련비용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주택보조금 등

㉕ 임차료

- 지난 1년간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을 임차 사용하고 지불한 비용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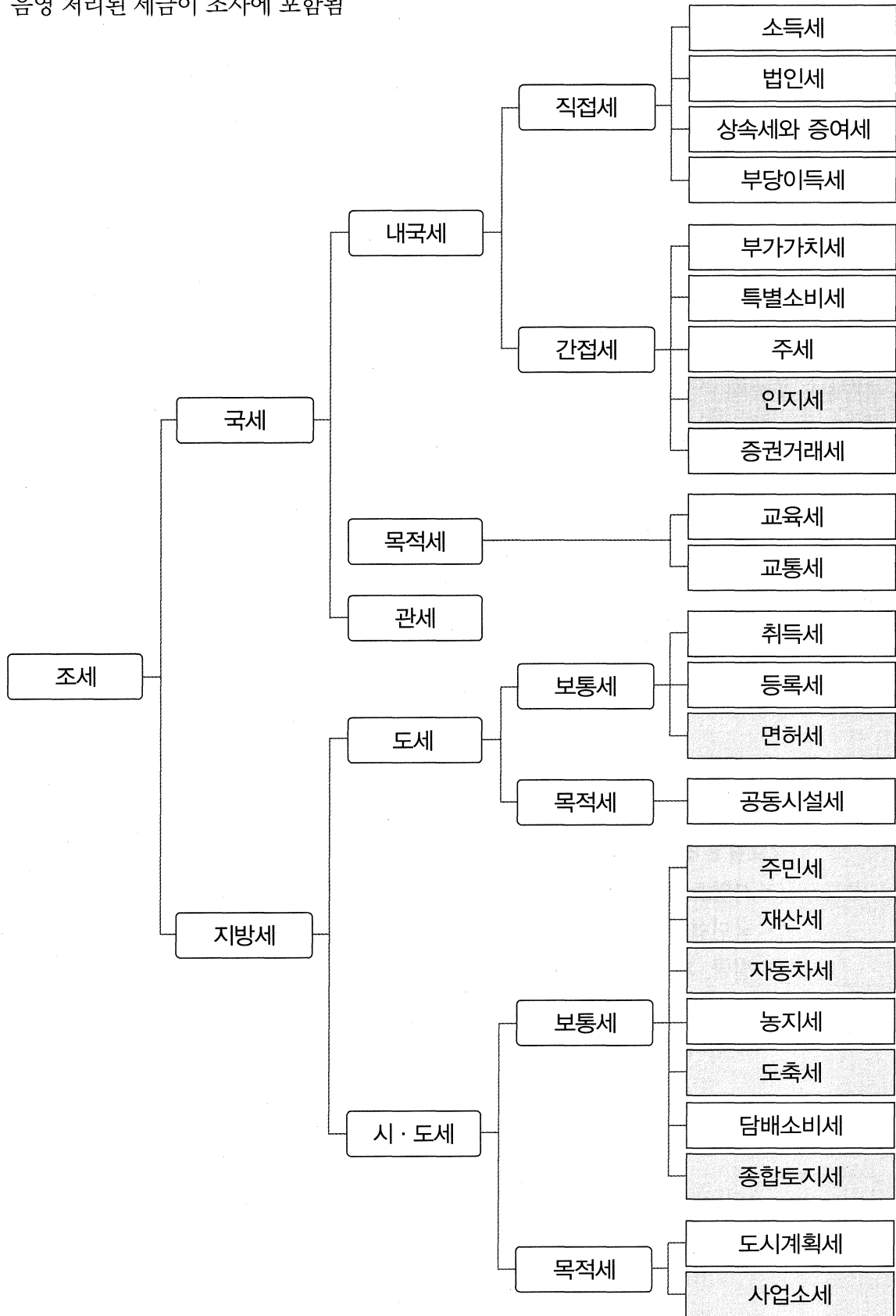
㉖ 세금과 공과

-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분으로 납부한 각종 세금, 공과금 및 범칙금 총액 <그림 6 참조>
 - 사업소세, 재산세, 면허세, 인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
 -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비, 동업자단체 부담금 등
 - 벌금, 과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과태료 등
 - ☞ 소득세, 납부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제외
 - ☞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수도광열비로 기타경비임에 유의



〈그림 6〉

음영 처리된 세금이 조사에 포함됨



㉞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은 자산의 사용, 마모, 진부화 등으로 인해 소모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비용으로 차감하는 평가적 비용
-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만을 칭하지만 조사표상예의 감가상각비에는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합산하여 기입

감가상각비의 간단한 계산 예

- 취득원가 1,500만원짜리 집의 내용연수가 10년이고, 그 집의 잔존가격이 100만원으로 판단될 때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 $(1500 - 100) / 10 = 140$ 만원 ∴ 1년에 140만 원씩 감가상각

㉟ 대손상각비

-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 중 미 회수 등의 사유로 손실 가능성이 예상되어 자산에서 차감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입

㊱ 기타 경비

- ㉿~㉟ 항목을 제외하고 접대비,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전본비, 포장비, 회의비, 잡비 등 나머지 모든 계정과목을 합산하여 기입

③ 영업이익

❖ ① 매출액 - ② 영업비용 = ③ 영업이익

- 영업손실(적자)이 발생하면 「-」부호를 금액 앞에 표기

- ❖ 5종의 조사표에 있는 업종별 사업실적(매출액 및 영업비용)은 상기의 G 도매 및 소매업의 항목해설과 동일하지만 다음은 추가적으로 설명이 요구됨

『H 숙박·음식점업 사업실적』

① 매출액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 및 소비비용(영업외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2	6	7
㉞	객실료수입액						2	3	5
㉟	음식료수입액						2	1	
㊱	기타영업수입액						1	1	

㉞ 객실료수입액

- 지난 1년간 객실을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대실료 수입총액
- 객실료에 음식료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객실료 수입액에 포함
- 예) 객실료(식사포함) \ 10,000 → 객실료 \ 10,000

㉟ 음식료수입액

- 지난 1년간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한 음식, 주류 또는 기타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총액
 - 접객시설을 갖추고
 - ☞ 각종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식사류 판매
 - ☞ 피자·햄버거·치킨·김밥·분식 등을 판매
 - ☞ 단란주점, 간이주점 등 접객요원을 유흥주점에서 주류를 주로 판매
 - ☞ 찻집, 제과점 등에서 각종 차류, 빵, 떡, 기타 음료수 등을 판매

㊱ 기타영업 수입액

- 지난 1년간 숙박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며 객실료 수입과 음식료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수입 총액을 기입
 - 호텔에서 상품 또는 제품(도시락 등)을 판매, 수영장 사용료, 회의장 사용료 등

2006
서비스업총조사
Service Industry Census

「K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여·수신, 증권, 보험 등)을 통한 총수익액과
소요비용(영업외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영 업 수 익	㉓ 보험료수익+...+ ㉗ 기타 영업수익 = ① 영업수익			4	3	5	0	0	
㉓ 보 험 료 수 익	원보험·재보험 계약 등으로 얻은 보험료			2	5	0	0		
㉔ 이 자 수 익	예금 등 자금의 대여에 대한 대가수익			2	5	5	0	0	
㉕ 수 수 료 수 익	금융·보험 등의 활동에 관계된 용역 제공 대가수익			3	5	0	0		
㉗ 기 타 영 업 수 익	㉖ 보험료수익 ~㉕수수료수익을 제외한 상품유가증권처분·평가이익, 외환이익, 잡수익 등 영업수익			1	2	0	0	0	
② 영 업 비 용	㉘ 금융·보험비용 + ㉙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② 영업비용			3	9	9	8	0	
㉘ 금 용 · 보 험 비 용	금융·보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			3	3	9	8	0	
금 ㉙ 이 자 비 용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 등			1	8	8	0	0	
용 ㉚ 수 수 료 비 용	외부 거래처 등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			2	5	0	0		
업 ㉛ 기 타 금 용 비 용	상품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 외환거래손실 등			7	8	0	0		
보 ㉜ 보 험 금 비 용	사고, 손해 등의 발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된 비용			1	9	0	0		
험 ㉝ 환 급 금 비 용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5	2	0			
업 ㉞ 책 임 준 비 금 전 입 액	장차 지불책임에 대비하여 기말에 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			1	8	0	0		
㉟ 기 타 보 험 비 용	배당금 비용, 재보험료 등			6	6	0			

① 영업수익

㉓ 보험료수익

- 지난 1년간 원보험과 재보험계약 등을 근거로 받은 보험료 등을 기입
- 보험료(재보험금)수익 = 원수보험료(재보험금) + 수재보험료

㉔ 이자수익

- 지난 1년간 자금의 예금, 투자, 대여 등을 통한 수익총액
- 예치금이자, 단기매매증권이자, 매도가능증권이자, 만기보유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및 배당금이자 등

㉕ 수수료수익

- 금융·보험회사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수익 총액
- 수입수수료, 수입보증료, 중도해지수수료, 신용카드수입수수료, 국민주택기금관리수수료 등

㉗ 기타 영업수익

- ㉓ ~ ㉕를 제외하고 배당금수익, 구상이익 등 나머지 사업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
- 기타 영업수익에는 책임준비금환입액,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신탁업무 운용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기타 영업잡수익 등

② 영업비용

㉑ 금융비용

㉑ 이자비용

-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 등의 총액

㉒ 수수료비용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외부 거래처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으로서 지급 수수료, 신용카드 관련수수료, 기타 지급수수료 등의 총액

㉓ 기타 금융비용

- ㉑ ~ ㉒의 항목을 제외하고 상품유가증권처분손실,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외환 거래손실, 기금출연료, 신탁업무운용손실,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기타영업 잡비용 등을 합산한 기타 금융비용

㉔ 보험비용

㉔ 보험금비용

- 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수익자에게 지불한 비용

㉕ 환급금비용

- 보험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 해지환급금

㉖ 책임준비금 전입액

- 책임 준비금이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대비하여 준비한 일정 금액으로 당해연도 말에 새로이 책임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 총액
☞ 보험료적립금 전입액, 지급준비금 전입액,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전입액, 계약자 배당준비금전입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전입액 및 재보험료적립금 전입액 등의 합계액

㉗ 기타 보험비용

- ㉔~㉖ 항목을 제외하고 배당금비용, 재보험료 비용, 상품유가증권처분손실,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이자비용 등을 합산한 기타 보험 비용

- 보험업종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실적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조사를 나가면 지사(점)에서는 응답을 안 해 주고 본사에서 알아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최대한 설득하여 보고 그래도 어려운 경우
- 사업실적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반드시 작성하고 비교란에 사유를 기재(‘④ 사업 실적 조사가 불가능’에 √ 표시)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사업활동(교육, 의료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한 총수익액과 소요비용(사업외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사업수익						5	4	0	0
② 등록금수익+...+ ④ 기타 사업수익 = ① 사업수익									
② 등록금(수업료)/의료수입 / 사회복지사업수익	등록금, 수강료, 강의로/보건·의료수익/사회복지활동에 의한 수익 등					2	0	0	0
④ 전입 및 기부금수익	기관·단체·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보조금 등					1	0	0	0
④ 기타 사업수익	학부모 부담 수입, 사용자료 수입, 수수료 수익 등 기타사업수익					2	4	0	0

① 사업수익

㉞ 등록금/의료, 사회복지 사업수익

- 지난 1년간 수강생(학생)으로부터 등록·수강의 대가로 받은 등록금 총액 / 보건의료, 사회복지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얻은 수익총액을 기입

☞ 등록금, 수강료, 수업료, 강의로, 입학금 등

㉜ 전입 및 기부금 수익

- 지난 1년간 민간·단체·기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이전수입 총액을 기입

☞ 정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부속병원전입금, 기부금 등

- ※ 기부금이란 사업(운영,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기관·단체)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취득한 재산적 증여를 말함

㉠ 기타 사업수익

- ㉞ ~ ㉜를 제외한 시설사용료, 수수료 등 나머지 사업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

『J, L, M, Q, R 사업실적』

① 사업수익

- 2005년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한 총수익액 및 소요 비용(사업외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사업수익						7	0	8	0
2005년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총액 ※ 대분류 J 통신업(64)은 아래 ㉠, ㉡, ㉢를 합하여 ① 사업수익에 기재									
J 통신업 (64)	㉠ 우편업					2	3	1	0
	㉠-1 우편 및 소포 송달수익								
	㉠-2 금융수익					4	4	2	0
	㉡ 전기통신사업수익								
	회선임대, 유·무선통신, 부가통신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					1	2	0	0
	㉢ 기타 사업수익					2	3	0	0
	㉠ 우편수익~㉡ 전기통신사업수익을 제외한 기타 사업수익 등								

■ 통신업을 제외한 업종(L, M, Q, R)의 연간 총수익은 ① 사업수익에 일괄 기입

㉑-1 우편 및 소포송달수익

- 지난 1년간 우편물의 수집·분배·배달, 우표판매, 사서함 임대 등의 활동으로 얻은 수익(우편수익) 및 소포·소화물의 수집·운반·배달 등의 활동으로 얻은 수익(소포송달수익)을 합산하여 기입

㉑-2 금융수익

- 우편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되는 우편지로 및 우편저축 등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여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금융 사업에 의한 수익을 합산하여 기입

㉒ 전기통신사업수익

- 지난 1년간 유선통신수익, 무선통신수익, 별정통신수익, 부가통신수익 등 전기통신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

※ 전기통신 사업수익의 예

구 분	사업 내용	사업 예시
유선통신수익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유선방식으로 음성 또는 비음성의 각종 통신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총수익액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기업통신, 공중전화, 전용회선서비스, 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ISDN), 접속서비스, 전신·전보 서비스 등
무선통신수익	무선전화, 무선폭출 및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여 얻은 총수익액	육·해·항공을 통한 이동전화, PCS, 무선폭출, TRS, 무선전화·전보, 무선 데이터 통신 등 이동통신서비스 등
별정통신수익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의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총수익액	국내·외를 통한 음성 또는 회선재 판매, 인터넷전화, 국제 콜백 전화서비스, PC 통신서비스 등
부가통신수익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여 얻은 총수익액	국내·외 팩스, 회선·패킷 교환, 프레임릴레이, 화상회의 등 서비스

㉓ 기타 사업수익

- 상기 ㉑ ~ ㉒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

다. 기업체단위 조사항목

- 15 항 ~ 18 항까지는 반드시 기업체 전체에 대한 실적을 작성(사업체 단위가 아님)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의 법인」이면서
 - 7 사업체 구분이 「1 단독」인 기업체 : 업종별 조사표(「1」~「6」)에 작성
 - 7 사업체 구분이 「2 본사(점)」인 기업체 : 본사조사표(「7」)에 작성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2 조직형태가 2회사법인 인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자본금 및 출자금				3	2	0	0	0
② 외국인 출자 자본금				6	0	0	0	0

(단위 : 백만원)

• 2005. 12. 31.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하십시오.

- 회사법인이며 단독 또는 본사(점)인 기업체에 한하여 2005. 12. 31. 기준으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이나 출자금 총액을 기입
 -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중 당기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

【외국인 출자 자본금】

■ 2005. 12. 31. 기준으로 자본금 중 외국인이 출자한 자본금을 구분하여 기입

- 여기서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 협력기구 등을 말함
- 사업체기초통계 조사표(1)은 회사법인으로 단독인 사업체만 자본금을 조사하되 외국인 출자 자본금은 제외

(2) 유형자산

16 유형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1) 연초잔액	(2) 연중증가액	(3) 연중감소액	(4) 감가상각비	(5) 연말잔액
① 토 지	2 5 1 0 0		4 5 0	1 2 0	2 5 4 3 0
② 건물 및 구축물	1 2 3 0 0		2 5 0	1 2 0 0	1 1 0 0 0
③ 기계 장치	3 5 0		2 0	2 0	3 3 8
④ 차량·운반구	2 6 0		0	0	2 3 5
⑤ 기타 자산	1 2 0 0		2 5	3 0	1 0 7 0
⑥ 건설중인 자산	2 5 0 0		0	0	2 5 0 0
⑦ 합 계	4 1 7 1 0		7 4 5	5 2 0	4 0 5 7 3

■ 유형자산이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함

- 내구성이 1년 미만인 공구·기구·비품은 자산이 아닌 소모품비로 분류하여 기타 사업 비용에 합산

■ 기업체의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

- 연 초 잔 액 : 2005. 1. 1. 현재, 즉 연초 유형자산 잔액
- 연중증가액 : 2005년 1년 중 구입 등으로 새로이 추가된 유형자산 증가액
- 연중감소액 : 2005년 1년 중 처분 등의 사유로 감소된 유형자산 감소액
- 감가상각비 : 2005년 중 비용 처리된 당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연 말 잔 액 : 2005. 12. 31. 현재 유형자산의 잔액(미상각 잔액)
- 임차사용 자산은 제외됨에 유의

① 토지

-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임야 등

② 건물 및 구축물

- 영업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목설비 공작물 등
- 건 물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속설비 등
- 구축물 : 선로, 궤도, 저수지, 갯도, 굴뚝, 정원 및 기타의 토목설비 등

③ 기계장치

- 동력 등을 이용해 원·부재료를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제조 설비·장치
-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덤프트럭, 도자 등

④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와 선박과 항공기 등 해상·항공 운송수단을 포함

⑤ 기타 자산

- ①~④ 항목 이외에 어느 계정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자산
- 1년 이상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

⑥ 건설 중인 자산

- 업무용 유형자산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완공이 되기까지 일시 처리하는 계정

(3) 무형자산

17 무형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1) 연초잔액		(2) 연중증가액		(3) 연중감소액		(4) 감가상각비		(5) 연말잔액	
① 산업재산권	4	5 0 0		1 2 0		2 5 0		1 2 0 0	3	1 7 0
② 저작권		0		0		0		0		0
③ 소프트웨어		0		0		0		0		0
④ 개발비		0		0		0		0		0
⑤ 기타 자산		1 2 0		2 0		2 5		1 0	1	0 5
⑥ 합 계	4	6 2 0		1 4 0		2 7 5		1 2 1 0	3	2 7 5

■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
(☞ 판단기준 :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것)

- 연 초 잔 액 : 2005. 1. 1. 현재, 즉 연초 무형자산 잔액
- 연중증가액 : 2005년 1년 중 구입 등으로 새로이 추가된 무형자산 증가액
- 연중감소액 : 2005년 1년 중 처분 등의 사유로 감소된 무형자산 감소액
- 감가상각비 : 2005년 중 비용 처리된 당기 무형자산 상각비
- 연 말 잔 액 : 2005. 12. 31. 현재 무형자산의 잔액(미상각 잔액)

① 산업재산권

-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립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② 저작권

-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③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외부에 지불한 비용
 - 1년 이상 임차 사용하고 지불한 임차료는 포함

④ 개발비

- 신제품·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자산 처리한 것
 -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

⑤ 기타 자산

- ①~④ 항목 이외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무형자산
 - 영업권, 창업비 및 기타 무형자산

(4)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18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J 통신업(64) 및 M 사업서비스업(72~75),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87~88)만 해당

(단위 :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기술연구개발비				3	5	0
② 기술도입비				2	1	0
③ 합 계				5	6	0

- 2005년 1년간 기업체가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투입한 총비용
- 기술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의 개발비 증가분 등 + 손익계산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등
- 기술도입비 : 로열티,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

■ J 통신업, M 사업서비스업 및 Q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이 작성 대상

■ 기술연구개발비란 2005년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된 총비용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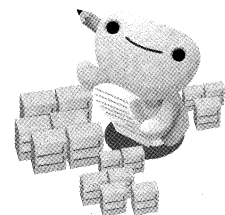
- 제품생산·제조공정에 관한 기술개발이나 기술개선을 위한 활동에 투입된 금액
- 자체 기술연구개발비와 위탁 기술연구개발비를 모두 포함
- 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도 포함
- 기술연구개발비는 비용항목(손익계산서)이나 자산항목(대차대조표)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연구개발에 사용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 따라서, 1년간 자산항목의 개발비 증가분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인 연구비, 경상개발비 등을 모두 포함

☞ 기술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 개발비의 연중증가액 + (손익계산서) 연구비 + 경상개발비

☞ 무형자산으로서 상각 처리된 개발비는 포함하지 않음

■ 기술도입비란 국내·외를 불문하고 서비스업활동과 관련하여 2005년 1년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기타 기술을 인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기입

- 무형자산으로 증가된 금액 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여부를 불문하고 연중에 기술도입으로 지불한 비용을 모두 합산
- 무형자산으로서 상각 처리된 산업재산권은 포함하지 않음



라. 비 고

비고 ※ 아래 항목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 표를 하시오. 기타란은 그 사유를 ()안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 | | |
|----------------------------|-----------------|-----------|
| ① 경영적자 | ② 전세로 지급임차료 없음 | ③ 조직형태 변경 |
| ④ 사업실적 조사가 불가능 | ⑤ 본사의 사업실적이 합산됨 | |
| ⑥ 기타 (사업실적은 충청지역본부에서 조사가능) | | |

■ 조사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체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① 경영적자

- 2005년 1년간의 사업실적의 영업이익이 손실(적자)인 경우 ✓ 표시

② 전세로 지급임차료 없음

- 전세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사업비용에 임차료 지급이 없는 경우 ✓ 표시

③ 조직형태 변경

- 2005년도에 「 6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 표시

- 개인 → 회사법인으로 변경 등

④ 사업실적 조사가 불가능

- 계속된 방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 응답할 사람이 없거나 응답불응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표시

- 법인의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 사업실적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표시

⑤ 본사의 사업실적이 합산됨(기업체단위 조사)

- 조사 내용에 본사의 사업 실적이 합산되었거나 기업체 전체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어져 있을 경우 ✓ 표시

※ 단, 자본금, 유·무형자산과 R&D항목은 기업체 전체금액이 기입되어야 함

⑥ 기타

- 기타 조사에 관한 사업체의 중요 사항이나 정상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이 항목에 ✓ 표시하고 그 내용이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조 사 자	성 명	김민자	(인)	전화번호	(02) 123-4567	H·P	011-123-3567
-------	-----	-----	-----	------	---------------	-----	--------------

마. 본사조사(조사표 7) 요령

- 업종별 조사표(1~6)에서 ⑥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또는 ③ 회사이외의 법인이라면 ⑦ 사업체 구분이 본사(점)인 사업체는 반드시 본사조사용 조사표(7)를 작성
 - 사업체의 산업(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또는 서비스업 인지를 불문하고 회사법인 또는 회사이외 법인의 본사(점)은 모두 작성 대상
- 본사조사표상의 모든 항목은 기업체의 전체 사업실적을 기입
 - 본사(점),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소 등의 실적을 모두 통합한 기업체 전체 실적
 - ※ 본사(점)에서 지사(점) 별로 사업실적 배분이 가능한 경우 본사조사표(7)이외에 지사점별 사업실적 조사표(엑셀파일)를 추가 작성

(1) 기업체명

1 기업체명	대 한 제 과 인터넷주소(URL) http://www.statbakery.co.kr
---------------	---

- 기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정식명칭을 기입
 - 예) ○○자동차(주), ○○백화점(주)

(2) 대표자명

2 대표자명	김 동 제	성 별	<input checked=""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	-------	-----	--

- 해당 기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기입

(3) 창설년월, 법인등록번호

- 업종별 조사표 ③ 창설년월, ⑥-1 법인등록번호 작성요령 참조

(4) 소재지

4 소재지	주업 읍·면·동 가·리 1002 번지 21 호 2 통 4 반 크다 빌딩·시장·상가 1002 동 15 층 21 호
--------------	---

- 기업체가 실제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현행 법정 읍·면·동, 가·리와 번지, 호수,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
- 특히, 빌딩, 시장, 상가 등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경우 빌딩, 시장, 상가의 명칭과 동·층·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5) 조직형태

■ 업종별 조사표 6 조직형태 기입요령 참조

(6)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업종별 조사표 15 자본금 및 출자금 기입요령과 동일

(7) 사업의 종류

- 「사업내용」은 제조, 도매, 소매, 건설 등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을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부터 기입하십시오.
-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은 사업 내용에 따른 생산품, 취급상품 및 영업종목을 기입하십시오.

7 사업의 종류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① 주사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	0	0	소주, 양주, 맥주, 사이다 및 롱나	5	1	3
② 부사업1								
③ 부사업2								

- 2005년 1년간 기업체의 실적 중에서 매출액 비중이 큰 순서에 따라 사업내용과 비중(%)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되, 주사업, 부사업1, 부사업2까지만 기입
- 매출액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사자수나 시설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입하고 사업내용별 비중(%)을 기입
- 산업분류부호는 소분류(3자리)까지 담당조사원이 기입

(8) 종사자 수

- 2005년에 본사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관할(직영)하는 지·사점을 포함한 기업체 전체의 월평균 종사자수를 종사상 지위별 및 성별로 구분하여 기입
- 상용, 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는 업종별 조사표 9 종사자수 기입요령과 동일

(9) 결산 마감월

9 결산마감월

- 2005년 회계연도 결산 마감 기입

1	2	월
---	---	---

- 일반적으로 기업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회계연도로 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체에서는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이와 같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달을 결산마감월이라 함
- 결산마감월은 12월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3월, 7월, 9월 등과 같이 상이한 경우도 있음

(10) 사업실적

■ 업종별 조사항목 **14-2** 사업실적 기입요령과 동일

특히, **10** 항 사업실적은 기업체의 주된 산업에 해당하는 유형(6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

(11)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11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J 통산업(64) 및 M 사업서비스업(72~75), Q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87~88)만 해당

(단위 :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기술 연구 개발 비					5	0
② 기술 도입 비					2	7
③ 합 계					7	7

- 2005년 1년간 기업체가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투입한 총비용
- 기술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의 개발비 증가분 등 + 손익계산서의 연구비, 경상 개발비 등
- 기술도입비 : 로열티,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

■ 2005년 1년간 기업체가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투입한 총비용

■ 기술연구개발비 = 개발비증가분(무형자산) + 연구비, 경상개발비 등(손익계산서)

■ 기술도입비 : 로열티 등

(12) 유형자산

■ 업종별 조사표 **16** 유형자산 기입요령과 동일

(13) 무형자산

■ 업종별 조사표 **17** 무형자산 기입요령과 동일

(14) 관할 사업체 현황

14 관할 사업체(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 현황

① 지사(점)수 계	② 국내 지사(점)수	③ 해외 지사(점)수
25	20	5

- ① 지사(점)수 = ② 국내 지사(점)수 + ③ 해외 지사(점)수
- 프랜차이즈가맹점, 특약점, 대리점 등 자사(自社) 관할이 아닌 사업체는 제외합니다.

(가) 지사(점)수 계

■ 국내·외를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본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지사(점)수를 그 명칭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기입

- 국내소재 지사(점)수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소재하는 본사관할 지사(점)수

- 외국소재 지사(점)수 : 해외에 소재하는 본사관할 지사(점)수

※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 특약점 등과 같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는 제외

(나) 국내 사업체명부

14-1 국내사업체 명부

• 본사에서 관할하는 국내 소재 사업체를 각각 기입하십시오.(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연구소 및 사업체에 해당하는 보조 활동 포함)

• 14-1 항의 국내 사업체명부 양식은 홈페이지(<http://scensus.nso.go.kr>)/정보센터/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사(점)수가 42개를 초과할 경우 별지서식으로 기입하십시오.

(단위: 명, 백만원)

일련 번호	① 사업체명 (구체적으로 기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행정읍·면·동을 기입)	④ 전화번호	⑤ 종사자수	⑥ 연간 급여액	⑦ 연간매출액 (사업수익)	⑧ 주된 사업내용 (품명 또는 사업활동을 기입)	* 소분류
1		-	시·도 시·군·구·동 읍·면·동	() -					

⋮

■ 본사에서 관할하는 국내의 모든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연구소, 훈련원 등에 대한 사항을 빠짐없이 각각 작성

① 사업체명

- 직·간접적으로 본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 소재 영업소, 지사(점), 출장소 등의 공식 명칭을 기입

② 사업자등록번호

- 지사(점) 등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단위별로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 지사(점) 등이 실제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를 기입

④ 전화번호

- 지사(점) 등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전화번호를 기입

⑤ 종사자수

- 지사(점) 등 사업체단위별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기입
(상용, 임시, 일용 및 무급종사자를 모두 포함)

⑥ 연간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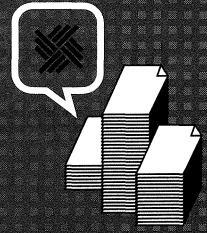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종사자에게 지급한 연간급여액을 지사(점) 등 사업체단위별로 구분하여 기입
• 급여, 노임, 각종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등을 모두 합산

⑦ 연간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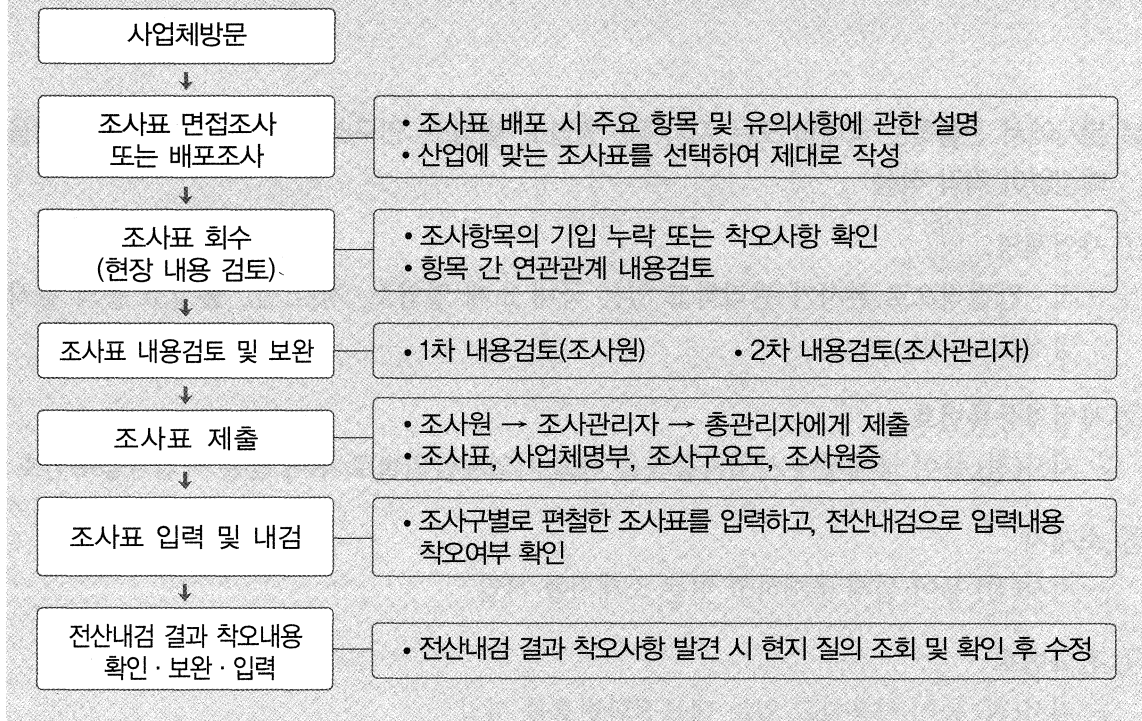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지사(점)별 총매출액을 기입

⑧ 주된 사업내용

- 지사(점) 등의 사업활동 내용을 주된 것 하나만 기입
• ★표 산업소분류는 통계청(조사원)에서 기입



현지조사 및 내용검토 흐름도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그날그날 내용검토를 철저히 하여 기입착오, 항목누락, 관련 항목간 계수 불일치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함

1] 조사대상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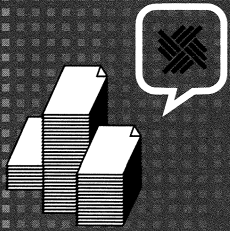
- 조사대상 사업체는 사업체별로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52820)
 - 그 외 기타 무점포소매업(52899)
 - 이동음식점(55223)

2 기본사항 검토

-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와 비교 검토하여 누락, 착오, 불일치 여부를 확인
- 사업체명부 상의 사업체는 빠짐없이 모두 조사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
- 산업분류에 따라 조사표 종류는 맞게 선택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
- 사전출력사항(❶ 항 사업체명 ~ ❸ 항 사업의 종류)의 변경내용은 적색으로 정확하게 수정·보완 되었는지 여부
- 인터넷조사업체도 조사표에 기본사항을 작성 후 적색으로 「인터넷조사」라고 기입하였는지 확인
- 회사법인 또는 회사이외의 법인으로 본사인 사업체는 업종별 조사표(1~6표) 외에 본사조사표(7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 조사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
 - 사업체의 업종에 따라 항목별 기입 여부 확인
 - 실적이 없는 항목의 경우, 세부항목별로 숫자 “0”을 기입
 - 항목 전체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필로 사선(∖)처리
- 결산사업체는 결산서 상의 각 계정과목을 조사표 항목과 연계하여 조사표 검토
- 해당번호에 ‘√’표를 해야 할 항목
 - 관련 항목이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계’를 기입하는 항목은 합계가 정확한지를 확인
 - 종사자수, 사업실적, 사업장 건물면적, 유·무형자산, 기술연구개발비 등
- 사업실적 항목의 각 합계가 정확한지를 확인 ➡ 해당사항 점검 기입
 - 매출원가 = 연초상품재고액 + 연중상품매입액 - 연말상품재고액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❶ 인건비 + ❷ 퇴직급여 + … + ❸ 기타
- 수정항목은 두 줄(=)을 그은 다음 바른 내용을 적색으로 기재(수정액 사용 불가)

3 연관사항 검토

-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의 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2 본사(점)이면 반드시 본사조사용 조사표(7)를 추가 작성
-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의 법인 사업체
 - ➔ 7 사업체구분이 1 단독사업체이면 업종별 조사표에 16 유형자산, 17 무형자산을 기업단위로 작성
 - ➔ 7 사업체구분이 2 본사(점)이면 본사조사표에 12 유형자산, 13 무형자산을 기업단위로 작성
-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사업체
 - ➔ 7 사업체구분이 1 단독사업체이면 업종별 조사표에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업단위로 작성(단, 조사표 1은 11 자본금에 작성)
 - ➔ 7 사업체구분이 2 본사(점)이면 본사조사표에 6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업단위로 작성
 - J 통신업(64), M 사업서비스업(72~75) 및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으로 7 사업체 구분이
 - ① 단독사업체 : 업종별 조사표 18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를 추가 작성
 - ② 본사(점)사업체 : 본사조사표 11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를 추가 작성
- ❑ 6 조직형태가 1 개인사업체 또는 5 비법인 단체에 '√' 표한 사업체는 사업실적을 14-1 항에 작성하고,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3 회사이외의 법인 또는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 표한 사업체는 사업실적을 14-2 항에 작성
- ❑ 1 사업체명에 인터넷 주소 ⇔ 11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 6 조직형태가 1 개인사업체이면 9 종사자수 중 자영업주는 반드시 1명이상 일 것
- ❑ 조사표(2 : G 도매 및 소매업) 13-1 상품매입처별 구성비, 13-2 상품판매처별 구성비는 구성비(비중)의 합이 "100"이 되어야 함
- ❑ 조사항목 간에 연관관계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조사표 해당항목의 비교란에 사유를 기재
 - 예 사업장 건물면적의 임차면적이 조사되었는데 비용항목에 임차료가 없을 경우 재확인하여 맞으면 비교란의「전세로 지급임차료 없음」에 '√' 표시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IX. CHAPTER

I 조사표류 정리

■ 사업체명부

- 사업체의 변동내용이 보완(적색)된 사업체명부는 해당 조사구별로 편철한 업종별 조사표의 첫 장에 합철(해당 조사구의 사업체명부 + 조사표)

■ 조사표

- 조사표는 업종별 조사표(1~6표)와 본사조사표(7표)로 구분하여 편철

〈업종별 조사표(1~6표)〉

업종별 조사표(1~6표)는 읍·면·동 및 조사구별로 구분하여 편철

- 조사구별 사업체일련번호 순으로 편제

■ 업종별 조사표 표지의 기입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

(시)·도	시·군·(구)	읍·면 (동)
대구	남	대경1

➔ 행정구역명 : 읍·면·동은 행정 읍·면·동명을 기재

행정구역분류부호								
2	2	-	0	4	0	-	5	6

➔ 행정구역분류번호 : 행정구역분류부호 7자리를 기입

■ 조사표 표지의 기입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

읍·면·동별	조사구 수	68개 조사구
	조사표 권수	68권 중 1권
조사구 번호		001 조사구
조사표 매수		51매

➔ 읍·면·동별 조사구수 : 읍·면·동별 조사구수를 기입
(읍·면·동별 조사구수와 조사표 총 권수는 일치해야 함)

예 ○○○동의 조사구 수가 총 20개일 경우 조사표 총 권수는 20권임
20권 중 1권, 20권중 2권,……, 20권중 20권

- ➡ 조사구번호 : 해당 조사구번호와 특성번호(4자리)를 기입
- ➡ 조사표매수 : 조사구별로 편철한 조사표의 총매수를 기입

예 ○○○조사구의 총 조사표 매수가 51매이면 위와 같이 기록

당초 사업체수 (A)	증가 사업체 수(B)				감소 사업체 수(C)					조사 사업체수 (D=A+B-C)	
	증가계	신설	누락	전입	감소계	장기휴업	폐업	전출	기타 (중복 대상외등)	본사수	

- ➡ 당초사업체수(A) : 사업체명부상 사업체수를 기입
- ➡ 증가사업체수(B) : 준비조사 기간에 사업체 명부를 확인한 결과 신설, 누락, 전입 등의 사유로 담당 조사구에서 증가한 사업체 수를 기입
- ➡ 감소사업체수(C) : 준비조사 기간에 사업체 명부를 확인한 결과 장기휴업(6개월), 폐업, 전출, 중복, 대상외 등의 사유로 담당 조사구에서 감소한 사업체 수를 기입
- ➡ 조사사업체수(D) : 당초사업체수(A) + 증가사업체수(B) - 감소사업체수(C)로 조사된 조사표 매수와 동일해야 함

현지조사	
조 사 원	홍길자 (홍)
조 사 관 리 자	박수지 (박)
총 관 리 자	김현미 (김)

- ➡ 해당 조사구의 조사원, 조사관리자, 관할 총관리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 조사표 표지의 옆면도 기재

〈본사조사표(7표)〉

본사조사표(7표)는 시·군·구별로 묶어 1권으로 편철

■ 본사조사표 표지의 기입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

① 시 도	시·군 ② 구
대구	남

- ➡ 본사조사표 표지는 조사관리자가 작성
- ➡ 행정구역명 : 시·군·구 명을 기재

행정구역분류부호					
2	2	-	0	4	0

➡ 행정구역분류부호 : 시·군·구 분류부호 5자리를 기입

당초 본사 수(A)	증가 본사 수(B)	감소 본사 수(C)	조사대상 본사 수 (D=A+B-C)	조사된 본사 수(E)	미조사 본사 수(F)

- ➡ 당초·증가·감소·조사대상 본사 수 : 업종별 조사표 표지 작성방법에 준함
 - 당초본사수 : 당초 사업체명부상 사업체 수 중 **6** 조직형태 ② 회사법인 또는 ③ 회사이외법인으로 본사인 사업체수를 기입
- ➡ 조사된 본사수(E) : 본조사 기간에 본사조사표를 작성한 본사 수
- ➡ 미조사 본사수(F) : 본조사 기간에 본사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본사 수
 - ※ 단, 본사의 업종별 조사표(1~6표)는 반드시 본조사 기간에 완료되어야 함
- ➡ 미조사 본사가 있는 시·군·구는 미조사된 본사조사업체 명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지방통계청(사무소)에 즉시 통보
 - ※ 미조사 본사는 결산 작업중(2~4월)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응답불응 사업체는 불인정)

미조사된 본사조사업체

일련 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조사구 번호	사업체 일련번호	본사명	소재지(법정동, 번지, 빌딩, 상가, 층, 호)	시·도			시·군·구		비고
						응답자 전화번호	작성부서	응답자명	미조사 사유		
1						() -					
2						() -					
3						() -					

2] 조사표류 제출

■ 제출 조사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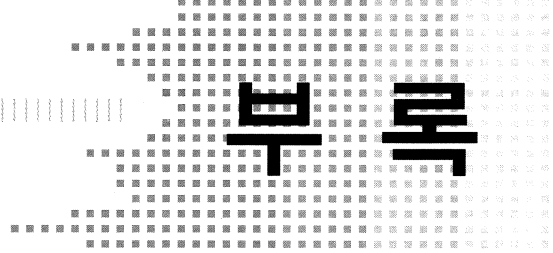
- 업종별 조사표(조사구별로 편철한 것), 본사조사표
- 사업체명부(적색으로 수정·보완한 것) 2부
- 조사구역도(적색으로 수정·보완한 것) 2부
- 조사원증 및 조사(지도)지침서(필요시)

■ 제출방법

- 조사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총관리자에게 제출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 조사표와 재무제표의 관계

- 가. 재무제표(기업회계)와 총조사 항목 연계표
- 나. 학교회계와 조사표와의 관계
- 다. 기타 부속명세서와 조사표와의 관계
- 라. 감가상각 및 연구개발비 해설

2. 재무제표와 조사항목 대비표

- 가. 손익계산서와 사업실적
- 나. 대차대조표와 유·무형자산

3. 사업체명부

4. 업종별 조사표



1. 조사표와 재무제표의 관계

가. 재무제표(기업회계)와 총조사 항목 연계표

■ 대차대조표(보고식)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당기) (2004년 12.31. 현재)		제×(전기) (2003년 12.31. 현재)		조사표 항목
	금액		금액		
1. 유동자산		11,675		12,189	
(1)당좌자산		8,746		9,402	
1. 현금및현금등가물		1,078		566	
2. 단기금융상품		504		1,443	
3. 유가증권		84		317	
4. 매출채권	6,898		6,755		
대손충당금	(68)	6,830	67	6,688	
5. 단기대여금		1		153	
6. 미수금		34		35	
7. 선급금		112		155	
8. 선급비용		103		45	
(2)재고자산		2,929		2,787	
1. 제품		2,012		1,384	
2. 원재료		434		574	
3. 상품		483		829	
II. 고정자산		46,012		42,804	
(1)투자자산		15,707		8,386	
1. 장기금융상품		1,477		907	
2. 투자유가증권		13,607		6,147	
3. 보증금		7		11	
4. 이연법인세차		514		1,219	
5. 기타의투자자산		102		102	
(2)유형자산		30,299		34,403	⑩ 유형자산
1. 토지		6,270		6,270	⑩-① 토지
2. 건물	9,773		9,773		
감가상각누계액	(1,123)	8,650	(898)	8,875	⑩-② 건물과구조물
3. 구축물	2,562		2,562		
감가상각누계액	(1,043)	1,519	(879)	1,683	⑩-② 건물과구조물
4. 기계장치	31,731		31,455		
감가상각누계액	(18,017)	13,714	(14,069)	17,386	⑩-③ 기계장치
5. 차량운반구	175		241		
감가상각누계액	(119)	56	(163)	78	⑩-④ 차량운반구
6. 공구와기구	143		143		
감가상각누계액	(137)	6	(131)	12	⑩-⑤ 기타 자산
7. 집기비품	498		483		
감가상각누계액	(414)	84	(384)	99	⑩-⑤ 기타 자산



과 목	제×(당기 (2004년 12.31. 현재)		제×(전기 (2003년 12.31. 현재)		조사표 항목
	금액		금액		
(3)무형자산		6		15	⑰ 무형자산
1. 영업권		-		-	⑰-⑤기타자산
2. 산업재산권		6		15	⑰-①산업재산권
3. 광업권		-		-	⑰-⑤기타자산
4. 어업권		-		-	⑰-⑤기타자산
5. 차지권		-		-	⑰-⑤기타자산
6. 창업비		-		-	⑰-⑤기타자산
7. 개발비		-		-	⑰-④개발비
자산총계		57,974		55,471	
부채					
Ⅰ. 유동부채		22,294		12,785	
1. 매입채무		768		413	
2. 미지급금		1,021		479	
3. 단기차입금		7,997		5,169	
4. 예수금		70		53	
5. 미지급비용		1,210		922	
6. 미지급배당금		-		1,714	
7. 선수금		2		4	
8. 임대보증금		479		438	
9. 부가세예수금		180		30	
10. 미지급법인세		873		132	
11. 유동성장기부채		9,694		3,431	
Ⅱ. 고정부채		10,652		21,984	
1. 장기차입금		10,003		20,924	
2. 퇴지급여충당금	1,918		1,259		
국민연금전환금	(71)		(92)		
퇴직신탁	(1,198)	649	(107)	1,060	
부채총계		32,946		34,769	
자본					
Ⅰ. 자본금		13,425		13,425	⑮-①자본금 및 출자금
1. 보통자본금		13,425		13,425	
Ⅱ. 자본잉여금		3,550		156,841	
1. 주식발행초과금		1,576		78,421	
2. 재평가적립금		1,974		78,400	
3. 자기주식처분이익		-		20	
Ⅲ. 이익잉여금		12,541		8,511	
1. 이익준비금		600		600	
2. 기업합리화적립금		349		349	
3.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1,592		7,562	
(당기순이익)		4,030		2,231	
Ⅳ. 자본조정		(4,498)		(4,796)	
1. 자기주식		(4,498)		(4,796)	

■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당기 (2004년 12.31. 현재))		제×(전기 (2003년 12.31. 현재))		조사표 항목
	금액	금액	금액	금액	
I. 매출액		56,221		52,113	14-2-1
1. 국내매출액	44,944		46,276		
2. 제품수출액	10,212		5,837		
3. 상품매출액	1,065		-		
II. 매출원가		45,136			14-2-2㉠
(1)제품매출원가	44,290		41,665	41,665	
1. 기초제품재고액	1,384		2,418		14-2-2㉠㉡
2. 당기제품제조원가	44,951		40,652		14-2-2㉠㉢
계	46,335		43,080		
3. 관세환급금	(33)		(31)		
4. 기말제품재고액	(2,012)		(1,384)		14-2-2㉠㉣
(2)상품매출원가	846		-		
1. 기초상품재고액			-		14-2-2㉡㉠
2. 당기상품매입액	846		-		14-2-2㉡㉢
계	846		-		
3. 기말상품재고액	-		-		14-2-2㉡㉣
III. 매출총이익		11,085		10,448	
IV. 판매비와관리비		4,304		3,372	14-2-2㉣
1. 급여		842		759	14-2-2㉣㉠
2. 퇴직급여		278		25	14-2-2㉣㉢
3. 복리후생비		97		112	14-2-2㉣㉣
4. 여비교통비		17		9	14-2-2㉣㉤
5. 통신비		17		17	14-2-2㉣㉥
6. 세금과 공과		12		39	14-2-2㉣㉦
7. 감가상각비		51		63	14-2-2㉣㉧
8. 접대비		81		84	14-2-2㉣㉨
9. 광고선전비		6		8	14-2-2㉣㉩
10. 운반비		975		703	14-2-2㉣㉪
11. 보험료		4		2	14-2-2㉣㉫
12. 지급수수료		126		325	14-2-2㉣㉬
13. 대손상각비		25		228	14-2-2㉣㉭
14. 차량유지비		46		39	14-2-2㉣㉮
15. 교육훈련비		1		1	14-2-2㉣㉯
16. 도서인쇄비		2		2	14-2-2㉣㊱
17. 수도광열비		4		4	14-2-2㉣㊲
18. 수출제비용		1,666		949	14-2-2㉣㊳
19. 소모품비		45		3	14-2-2㉣㊴
20. 잡비		9		-	14-2-2㉣㊵
V. 영업이익		6,781		7,076	14-2-3



나. 학교회계와 조사표와의 관계

- 학교회계(초·중·고교에 국한)에는 관계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교원들의 봉급이나 인건비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계상하여
 - 사업수익의 전입 및 기부금 수입에 합산한 다음
 - 사업비용의 급여총액에 합산하여 계상

세입결산조사

(단위 : 원)

과 목			수납액	조사표 사업실적 중 해당과목
관	항	목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전입 및 기부금수입
		1. 학교교육비		
		2. 목적사업비		
2. 학부모부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기타사업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2.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2. 급식비		
		3. 앨범비		
		4. 기타		
3. 자체수입				
	1.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사업수입
		1. 사용료		
		2. 수수료		
	2. 기타 수입			
		1. 기타 수입		
4.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전입 및 기부금
		1.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5.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조금 및 지원금			전입 및 기부금
		1. 보조금		
		2. 지원금		
6. 이월금				
	1. 이월금			계상안함
		1. 이월금		
세입 합계				

② 등록금 수입

④ 전입 및 기부금수입

⑤ 기타 사업수입

세출결산조사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액	조사표 사업실적 란중 해당과목
관	항 목		
1.인건비			급여총액 ● ● ● ● ● ● ● ● ●
	1.교직원 인건비		
	1.교원연구비		
	2.제 수당		
	2.기타직 인건비		
	1.학교회계직원인건비		
	2.일용직인건비		
	3.퇴직적립금		
2.학교운영비			
	1.학생복리비		
	1.학생 복리비		
	2.교수학습활동비		
	1.교수학습 활동비		
	3.일반운영비		
	1.공통운영비		
	2.시설비		
3.수익자부담경비			
	1.수익자부담경비		
	1.현장학습비		
	2.급식비		
	3.앨범비		
	4.기타		
4.예비비			조사표에 반영안함
	1.예비비		
	1.예비비 세입합계		

- ㉠ 급여총액
- ㉡ 퇴직급여
- ㉢ 복리후생비
- ㉣ 임차료
- ㉤ 세금과 공과
- ㉥ 감가상각비
- ㉦ 대손상각비
- ㉧ 기타경비

다. 기타 부속명세서와 조사표와의 관계

유형자산 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토 지	12,841	■ 3,393	■ 1	16,233	0	■ 16,233
● 업무용 건물	15,452	6,807	0	22,259	5,057	17,202
● 기업토지건물	0	0	0	0	0	0
● 구 축 물	0	0	0	0	0	0
● (조 사 표 의) (건물과구축물)	15,452	6,807	0	22,259	5,057	17,202
차 량 운 반 구	750	109	78	781	599	182
건설증인자산	12,358	0	1	12,357	0	12,357
기 계 장 치	12,614	2,009	452	14,171	10,792	3,379
비 품	10,510	1,188	211	11,487	8,897	2,590
합 계	64,525	13,506	743	77,288	25,345	51,943

	(1)연초잔액	(2)연중증가액	(3)연중감소액	(4)감가상각비	(5)연말잔액
① 토 지	1 2 8 4 1	■ 3 3 9 3	■ 1	0	■ 1 6 2 3 3
② 건물 및 구축물	1 0 9 3 7	6 8 0 7	0	5 4 2	1 7 2 0 2
③ 기 계 장 치	3 4 2 6	2 0 0 9	4 5 2	1 6 0 4	3 3 7 9
④ 차 량 · 운 반 구	1 9 1	1 0 9	7 8	4 0	1 8 2
⑤ 기 타 자 산	2 9 1 1	1 1 8 8	2 1 1	1 2 9 8	2 5 9 0
⑥ 건설증인 자산	1 2 3 5 8	0	1	0	1 2 3 5 7
⑦ 합 계	4 2 6 6 4	1 3 5 0 6	7 4 3	3 4 8 4	5 1 9 4 3

- 상기 재무제표 유형자산명세서에서는 ⑥ 유형자산 중 연초잔액, 감가상각비를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유형자산명세서「미상각잔액」또는 대차대조표상 「전기 연말잔액」을 ⑥ 유형자산의 「연초잔액」에 그대로 이기하고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초잔액을 구한 다음 감가상각비는

- 감가상각비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연말잔액 공식으로 구하거나 감가상각비 명세서상의 당기 감가상각비를 기입

무형자산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당기상각액	기말잔액	비고

감가상각비

구분	자산과목	취득원가	당 기 상각액	상각액 누 계	기말잔액	상각방법	상각범위액에 대한 과부족액	
							당기분	누계
1. 유형자산	건물	22,259	542	5,057	17,202	정액법		
	건축물	0	0	0	0	정액법		
	기계장치	14,171	1,604	10,792	3,379	정액법		
	차량운반구	781	40	599	182	정액법		
	기타자산	11,487	1,298	8,897	2,590	정액법		
	계	48,698	3,484	25,345	23,353			
2. 무형자산	공업용수 이용권	22	3	20	2	정액법		
	전기시설 이용권	88	4	77	11	정액법		
	계	110	7	97	13			

자산항목 기재 요령

1. 유형자산 명세서, 무형자산 명세서에서 연중 증가액, 연중 감소액 만을 기입
2. 감가상각명세서에서 연중 감가상각비만을 기입
3. 연말잔액은 당해년도 대차대조표의 연말잔액 또는 유·무형자산명세서 상의 미상각잔액을 기입
4. 연초잔액은 전기 대차대조표의 연말잔액 또는 앞에서 구한 값을 역산하여 산출



라. 감가상각 및 연구개발비 해설

감가상각

■ 정의

자산이용과 시간경과에 따라 효익의 감소분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원가(비용)처분하는 과정

■ 상각방법

- 정액법(일정한 금액을 매년 상각), 정률법(일정한 비율로 매년 상각)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거의 정액법이 계산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정액법에 의한 1년 간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 잔존가액
 -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자산의 잔존물을 매각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한 금액
 - 세법상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함
- 내용연수
 - 추정되는 자산의 사용가능연수

연구개발비

■ 정의

- 연구개발비란 연구비(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와 개발비(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 항목의 개발비, 손익계산서상 경상개발비)를 합하여 칭하는 말이나 조사표에서는 1년 중 항목에 관계없이 연구개발(R & D)을 위하여 지출한 총액을 말함
 -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말함
 - 개발이라 함은 새롭거나 현저한 개량이 이루어진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과 관계될 것이 예상되는 활동을 말함
- 연구 활동의 일반적인 예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거나 새로이 개선하는 활동
 - 제품 등의 대체나 개선을 위한 방법이나 물건 등을 탐구하는 활동
 -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한 안들을 형성하고 설계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선정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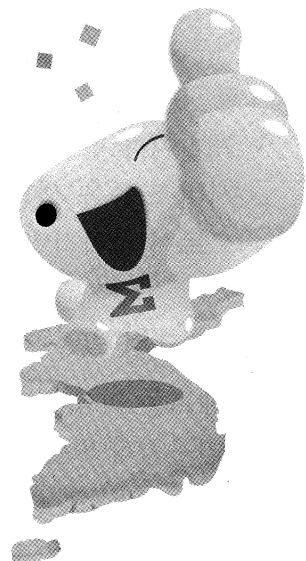


- 개발 활동의 일반적인 예

- 생산 또는 사용 전에 모형이나 샘플을 제작하거나 사용 테스트 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소규모의 시험실이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신제품 등으로 최종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개발비(경상개발비)는 손익계산서의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한다
-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의 설립이나 개발활동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건설, 유형자산의 구입, 유형자산의 리스(금융리스)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유형자산 항목으로 기재
- 연구소 운영을 위한 경비(감가상각비 포함)는 연구비로 처리
- 개발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개발비로 계상
- 개발활동과 일상적인 제조활동이 혼합되어 수행되는 경우
- 개발활동이 사전에 승인된 특정 개발과제 하에 수행되고, 개발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개발비로 계상



2. 재무제표와 조사항목 대비표

가. 손익계산서와 사업실적

■ 손익계산서 (백화점 사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당)기 (2004.12.31. 현재)		제×(전)기 (2003.12.31. 현재)		조사표항목
	금 액		금 액		
I. 매출액	56,221		52,113		
총매출액	65,156	57,113			
1. 상품매출액	54,944	46,276			
2. 기타영업수익	10,212	10,837			
3. 특정매입원가	(-)8,935	(-)5,000			
II. 매출원가	45,136		41,665		
1. 기초상품재고액	846	743			
2. 당기상품매입액	45,136	41,665			
계	45,136	41,665			
3. 기말상품재고액	846	743			
III. 매출총이익	11,085		10,448		
IV. 판매비외관리비	4,304		3,372		
1. 급여	842	759			
2. 퇴직급여	278	25			
3. 복리후생비	97	112			
4. 여비교통비	17	9			
5. 통신비	17	17			
6. 세금과 공과	12	39			
7. 감가상각비	51	63			
8. 접대비	81	84			
9. 광고선전비	6	8			
10. 운반비	975	703			
11. 보험료	4	2			
12. 지급수수료	126	325			
13. 대손상각비	25	228			
14. 차량유지비	46	39			
15. 교육훈련비	1	1			
16. 도서인쇄비	2	2			
17. 수도광열비	4	4			
18. 수출제비용	1,666	949			
19. 소모품비	45	3			
20. 잡비	9	-			
V. 영업이익	6,781		7,076		

①-② 사업실적

· 2004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벌어들인 수입 및 소요비용 (영업외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

(단위 : 백만원)

		상 조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① 매출액	② 상품매출액 + ④ 기타 영업수입액 = 총매출액	65	156	57	113			
③ 상품매출액	2004년 1년간 상품매출총액(특정매입매장 매출액 포함)	54	944	46	276			
④ 수수료수입액	타인의 상품을 대리판매 또는 중개하고 얻은 수수료 수입액							10
⑤ 기타 영업수입액	③ 상품매출액 및 ④ 수수료수입액 이외의 영업수입액	10	212	10	837			
② 영업비용	⑥ 매출원가 + ⑦ 판매비외 일반관리비 = ② 영업비용	45	136	41	665			
⑧ 매출원가	적영상품매출원가 + 특정매출원가 = 매출원가	45	136	41	665			
⑨ 연초상품재고액	2004.11.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재고액							846
⑩ 연중상품구입액	2004년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구입 총액	45	136	41	665			
⑪ 연말상품재고액	2004.12.31.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재고액							846
⑫ 판매비외 일반관리비	⑬ 급여총액 + ⑭ 기타 경비(손익계산서와 월가영제사상의 동일항목은 합산)	4	304	3	372			
⑬ 급여총액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842
⑭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78
⑮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97
⑯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총액							
⑰ 세금과 공과	재산세, 사업소득세, 연회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항비, 협회비, 적립저좌비 등 공과금 총액(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기치세 등은 제외)							12
⑱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51
⑳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25
㉑ 기타 경비	⑬ 급여총액 - ⑮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장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2	975	2	703			
③ 영업이익	매출액 - ② 영업비용 = ③ 영업이익	6	781	7	076			

특정매입매출액 포함

특정매입원가 8,935 포함

■ 손익계산서 (호텔업 사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당)기 (2004.12.31. 현재)	제×(전)기 (2003.12.31. 현재)	조사표항목
	금 액	금 액	
I. 매출액	423,508	399,706	
1.객실료수입	51,327	53,217	
2.식료 수입	65,034	55,035	
3.음료 수입	12,935	11,334	
4.봉사로 수입	9,716	8,724	
5.상품 매출액	248,976	246,875	
6.기타 수입	35,520	24,521	
II. 재료비	213,418	213,349	
1.식료	20,707	18,798	
2.음료	2,831	2,543	
3.상품매출원가	183,246	185,243	
4.기타	6,634	6,765	
III. 인건비	68,698	69,606	
1.급료 및 수당	50,865	48,754	
2.퇴직급여	7,746	8,765	
3.복리후생비	10,087	12,087	
IV. 경비	104,829	114,247	
1.식당용기비	520	512	
2.세탁비	10,923	18,789	
3.외주용역비	3,924	3,824	
4.세금과공과	21,327	22,334	
5.지급수수료	17,764	16,662	
6.감가상각비	15,667	15,324	
7.임차료	5,282	6,823	
8.수선비	10,528	310,111	
9.전기료	4,357	4,223	
10.가스료	1,251	1,321	
11.대손상각비	-	283	
12.장화장식비	1,500	1,042	
13.차량유지비	523	440	
14.교육훈련비	4,938	5,234	
15.잡비	6,325	7,325	
V. 영업이익	36,563	2,504	

④-②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 및 소요비용(영업이익외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십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4	2	3	5	0	8	
② 객실료수입액				5	1	3	2
④ 음식료 수입액				7	7	9	6
⑤ 기타 영업수입액	2	9	4	2	1	2	
② 영업비용	3	8	6	9	4	5	
②매출원가	2	1	3	4	1	8	
④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	7	3	5	2	7	
①급여총액				5	0	8	6
①퇴직급여				7	7	4	6
③복리후생비				1	0	0	8
②임차료				5	2	8	2
⑤세금과공과				2	1	3	2
⑥감가상각비				1	5	6	6
⑦대손상각비							0
⑧기타경비				6	2	5	5
③영업이익(①-②)				3	6	5	6

가. 손익계산서와 사업실적

■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당)기 (2004.12.31. 현재)		제×(전)기 (2003.12.31. 현재)		조사표항목
(2)유형자산	51,943		42,655		
1. 토지	16,233		■ -12,841		
2. 건물	22,259		15,452		
감가상각누계액	(5,057)	17,202	(4,515)	10,937	
3. 구축물	0		0		
감가상각누계액	0		0		
4. 기계장치	14,171		12,614		
감가상각누계액	(10,792)	3,379	(9,188)	3,426	
5. 차량운반구	781		750		
감가상각누계액	(599)	■ 182	(559)	191	
6. 기타 자산	11,487		10,510		
감가상각누계액	(8,897)	2,590	(7,598)	2,912	
7. 건설중인 자산	12,357		12,358		
감가상각누계액					
(3) 무형자산	6		12		
1. 영업권	0		0		
2. 산업재산권	6		■ 12		
3. 광업권	0		0		
4. 어업권	0		0		
5. 소프트웨어	■ 0		0		
6. 저작권	0		0		

① ~ ⑦항까지는 ①조직형태가 ② 또는 ③이면서 ④사업체구분이 ① 또는 ②인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⑧ 유형자산 ※ 기업체 전체금액을 기입하십시오.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단위 : 백만원)

	(1) 연초잔액	(2) 연중증가액	(3) 연중감소액	(4) 감가상각비	(5) 연말잔액
① 토 지	■ 12,841				1,623,3
② 건물및구축물	1,093,7				1,720,2
③ 기계 장치	3,426				3,379
④ 차량운반구	191				■ 182
⑤ 기타 자산	2,911				2,590
⑥ 건설중인자산	12,358				12,357
⑦ 합 계	4,266,4				5,194,3

⑧ 무형자산 ※ 기업체 전체금액을 기입하십시오.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단위 : 백만원)

	(1) 연초잔액	(2) 연중증가액	(3) 연중감소액	(4) 감가상각비	(5) 연말잔액
① 산업재산권	■ 12				6
② 저작권	0				■ 0
③ 소프트웨어	0				0
④ 개발비	0				0
⑤ 기타 자산	0				0
⑥ 합 계	0				0

■ 당기 감가상각비 구하기

— 당년도 감가상각누계액 - 전년도 감가상각누계액 = 당년도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0)

■ 연중 순증가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나. 대차대조표와 유형·무형자산



3. 사업체 명부

변동사유	증가: ① 전 입 ② 신규 ③ 누락
	감소: ④ 장기휴업 ⑤ 폐업 ⑥ 기타(전출, 중복, 대상외 등)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2204056)

↑ 조사구번호 009-1

일련 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창설년월	사업장 변 동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산 업 분 류	변동사유		비 고
										증가	감소	
21	길상선원	김해숙	053)624-7268	대명1 807번지 12호 3/5	2004. 01	1	5	1	91911			
22	영일노래방 시간호프열차	홍기순 김순복	053)666-3333 153)666-3333	대명1 807번지 4호 3/5	2005. 09 2003. 01	1	1	1	88913 55233	1	5	2005년 8월폐업
23	아주건설(주)	황성련	053)557-5800	대명1 807번지 13호 3/5 2층	2001. 08	1	1	1	45221			「리 인터넷 조사
24	세주북미	석강대	053)653-8787	대명1 807번지 13호 3/5	1994. 09	4	1	1	55211		6	2004. 11 대명1동 전출
25	옛스런두부마을	최숙연	053)623-2818	대명1 806번지 12호 3/5	2002. 10	1	1	1	55211			
26	녹원서예	김정희	053)652-9238	대명1 806번지 3호 3/4	1999. 06	1	1	1	80992			
27	칼리헤어	강석희 차순자	053)625-0510	대명1 806번지 3호 3/4	2002. 11	1	1	1	93112			대표자 변 경
28	반아유치원	노순희	053)655-0222	대명1 804번지 3호 3/4	1989. 03	1	3	1	80110			
29	아한 동백야기씨	송준록	053)654-0562	대명1 804번지 1호 3/4	2003. 12	1	1	1	55233			명 칭 변 경
30	이레PC방	서미자	053)629-4149	대명1 804번지 1호 3/4	2004. 01	1	1	1	88912			
31	정수건축계약사무소	김정수	053)625-6251	대명1 806번지 3호 3/4	2002. 03	2	1	1	74331	3		누 락
32	명 세탁	홍기동	053)557-1122	대명1 807번지 4호 3/5 2층	2001. 12	2	1	1	93912	1		2004. 07 전입

■ 사업체 명부 수정방법

- 수정사항은 붉은색으로 처리
- 사업체 변동시 “사업장 변동” 및 “사업체변동사유” 처리방법
 - ① 동일 사업장내 동일 사업체가 영업시
 - 사업장 변동 : 1(사업장 존속)
 - 변동 사유 : 공란
 - ② 동일 사업장내 기존업체가 폐업하고 신규업체가 창설시
 - 사업장 변동 : 1(사업장 존속)
 - 변동 사유 : 증가 2, 감소 5 각각 부여
 - ③ 동일 사업장내 기존업체가 전출하고 신규업체가 전입시
 - 사업장 변동 : 1(사업장 존속)
 - 변동 사유 : 증가 1, 감소 6 각각 부여
 - ④ 한 사업장내 사업체가 전출만 한 경우
 - 사업장 변동 : 4(사업장 철폐 및 폐쇄)
 - 변동 사유 : 감소 6만 입력
 - ⑤ 새로 발견된 사업장내 사업체가 창설한 경우
 - 사업장 변동 : 2(사업장 신설 및 누락)
 - 변동 사유 : 2
3. 누락 및 전입 등으로 새로 발견된 사업체는 명부의 사업체 마지막 번호 다음에 추가



승인번호
제 10137호

행정구역 분류부호			
-	-	-	-
조사구번호		사업체일련번호	
-	-	-	-



이 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따라 귀 사업체는 통계자료를 제출할 의무(제12조)가 있으며 조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제13조)하고 있습니다.

A 농업(01) 임업(02) B 어업(05) C 광업(10~12) D 제조업(15~37) E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40~41) F 건설업(45~46) I 운수업(60~63)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A~F(01~46), I(60~63), N(76)

1 사업체명	인터넷주소(URL) http://			응답자	성명
2 대표자명	성별 ① 남 ② 여				전화
3 창설년월	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읍·면·동	가·리	번지	호	통반
		빌딩·시장·상가		동	층호

5 사업장 변동 •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 ① 사업장 존속 ② 사업장 신설 및 누락 ③ 대상외 ④ 사업장 철거 및 폐쇄

6 조직형태 •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 ① 개인사업체 ② 주식회사
 ② 회사법인 ③ 유한회사
 ③ 회사이외법인 ④ 합자회사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⑤ 합명회사
 ⑤ 비법인단체 ⑥ 외국회사

6-1 법인등록번호

• ⑥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또는 ③ 회사이외법인만 기입

7 사업체 구분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점)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

본사명 : _____ 전화 : _____
 소재지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번지 _____

• ⑥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또는 ③ 회사이외법인인면서 ⑦ 사업체구분이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인 사업체는 위에 본사 사항을 기입

8 사업의 종류

• 「사업내용」은 광업, 제조, 건설, 운수, 공공행정 등 사업체의 주된 사업활동을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순으로 기입하십시오.
 •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은 사업 내용에 따른 생산품, 취급상품 및 영업종목을 2~3개씩 기입하십시오.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 부호
① 주사업				
② 부사업				

9 종사자 수 • 2005년 1년간 근무한 월평균종사자수를 기입하십시오. (단위: 명)

	(1) 자영업주	(2) 무급가족종사자	(3) 상용종사자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5) 무급종사자	(6) 합계
① 남						
② 여						
③ 계						

10 연간매출액

• 2005년 1년간 총매출액 및 영업 개월수를 기입하십시오. • 월평균 매출액 = 총매출액/연간영업한 개월수

• 총매출액(출하액, 판매액, 기성액, 예산지행액, 지원금 등)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	----	----	----	---	----	-----

• 연간 영업한 개월수 개월

• 월평균 매출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	----	----	---	----	-----

11 자본금

※ ⑥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인면서 ⑦ 사업체구분이 ① 단독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	----	----	----	---	----	-----

조사자	성명	(인)	전화번호	() - () - ()	H.P	-	-
-----	----	-----	------	-----------------	-----	---	---

통 계 청 시도

조사표 기입 요령

1 사업체명	•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법인기업은 등기상의 명칭)을 기입 (예 : 한은 ⇒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구지점 칠곡출장소)	응답자	• 주로 응답한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
2 대표자명	•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남녀에 √표시		
3 창설년월	• 등기일과 관계없이 최초로 산업활동을 시작했던 년월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시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 (단, 개인사업자가 각각 등록된 경우(자동차영업소의 딜러, 보험설계사,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무사 등)는 대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4 소재지	• 법정동과 리, 번지, 호, 통, 반 및 빌딩, 시장, 상가 등의 명칭과 동·호수까지 기입
		5 사업장 변동	• 동 항목은 담당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임

6 조직형태

•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 ① 개인사업체 :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
(개인은 둘 이상이 될 수 있음)
- ② 회사법인 : 상법상의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외국회사
⇒ 법인등록번호 기입
- ③ 회사이외법인 : 사단·재단·학교·의료·종교·특수법인 등
⇒ 법인등록번호 기입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
- ⑤ 비법인 단체 : 법인격이 없는 종친회, 동창회, 후원회, 산악회 등

7 조직형태

•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 ① 단독(본사나 지사가 없는 사업체)
- ② 본사·본점(영업소나 지사 등을 두고 이들을 총괄하는 사업체)
- ③ 지사(점)·영업소·공장
(본사 등으로부터 총괄지휘를 받고 있는 사업체)

※ ③ 지사(점)·영업소·공장에 √표한 사업체는 본사 사항을 기입

8 사업의 종류

(1) 사업내용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산업)을 기준으로 기입하되, 제조업의 경우는 재화의 명칭 외에도 재료, 공정, 용도 등을, 서비스업의 경우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이외에 목적 등을 알 수 있도록 기입(양계업, 원양어업, 구입한 원단을 이용한 남성복제조, 면방직업, TV 수상기제조, 토목공사업, 종합상품도매업, 일반대중에 대한 자금 여수신, 보험계약대리 및 알선 등)

(2) 취급품목

주 사업의 생산품목 또는 취급품목 중 매출액이 큰 2개 기입(이불·모포, 승용차내연기관, 식탁·싱크대, 남성용양복, 맨건설공사, 알루미늄샷시 설치, 건설용기계장비대여, 쇠고기·돼지고기, 화장품, 김치찌개 등)

※ 산업분류부호는 담당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임

9 종사자수

• 개인사업체는 자영업주가 1명 이상 기입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가 기입되면 안됨

• 본사(점)의 경우, 본사(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기입함(지사(점), 영업소, 공장 등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 현장에 근무하는 인부(특히 건설업)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임시·일일종사자는 연인원(延人員)이 아닌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비법인단체(동창회, 종친회, 산악회 등)의 회원, 종교단체의 신자, 봉사단체의 일일봉사자 등은 종사자수에서 제외함

• 자영업주 : 동업자 모두를 포함한 개인사업의 소유주를 말함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근무일의 1/3이상 종사하며, 무보수인자

• 상용종사자 : 1년 이상 고용계약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자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지라도 1년 미만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가 없이 실적수당을 받는 자

10 연간 총 매출액 ※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조사

• 2005년 1년간 제품의 생산·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출하액, 기성액, 판매액, 수입액, 예산집행액, 지원금 등)을 기입

※ 연간총매출액은 각 사업체별로 기입해야 하며, 본사(점)의 경우는 각 지사(점), 영업소, 공장의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11 자본금

※ [6]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인면서 [7] 사업체구분이 ① 단독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비고

•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밑에 구체적으로 기입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1** 단독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2** 본사인 사업체는 「본사조사표(7)」에 작성합니다.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인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 2005. 12. 31.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자본금 및 출자금								
⑦ 외국인 출자 자본금								

16 유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증증가액 - 연증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1) 연 초 잔 액				(2) 연 증 증 가 액				(3) 연 증 감 소 액				(4) 감 가 상 각 비				(5) 연 말 잔 액			
① 토 지																				
② 건물 및 구축물																				
③ 기 계 장 치																				
④ 차 량 · 운 반 구																				
⑤ 기 타 자 산																				
⑥ 건설중인자산																				
⑦ 합 계																				

17 무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증증가액 - 연증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1) 연 초 잔 액				(2) 연 증 증 가 액				(3) 연 증 감 소 액				(4) 감 가 상 각 비				(5) 연 말 잔 액			
① 산업재산권																				
② 저 작 권																				
③ 소 프 트 웨 어																				
④ 개 발 비																				
⑤ 기 타 자 산																				
⑥ 합 계																				

비 고

• 아래 항목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표를 하십시오.

• 기타란은 그 사유를 ()안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① 경영적자	② 전세로 지급임차료 없음	③ 조직형태 변경
④ 사업실적 조사가 불가능	⑤ 본사의 사업실적이 합산됨	
⑥ 기타 ()		

조사자

성명	(인)	전화번호	() - () - ()	H.P	-	-
----	-----	------	-----------------	-----	---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1 단독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2 본사인 사업체는 「본사조사표(7)」에 작성합니다.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인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백만원)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자본금 및 출자금								
⑦ 외국인 출자 자본금								

• 2005. 12. 31.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하십시오.

16 유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백만원)

	(1) 연 초 잔액				(2) 연 중 증 가 액				(3) 연 중 감 소 액				(4) 감 가 상 각 비				(5) 연 말 잔 액			
① 토 지																				
② 건물 및 구축물																				
③ 기 계 장 치																				
④ 차 량 · 운 반 구																				
⑤ 기 타 자 산																				
⑥ 건 설 증 인 자 산																				
⑦ 합 계																				

17 무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백만원)

	(1) 연 초 잔액				(2) 연 중 증 가 액				(3) 연 중 감 소 액				(4) 감 가 상 각 비				(5) 연 말 잔 액			
① 산 업 재 산 권																				
② 저 작 권																				
③ 소 프 트 웨 어																				
④ 개 발 비																				
⑤ 기 타 자 산																				
⑥ 합 계																				

비 고

• 아래 항목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표를 하십시오. • 기타인 경우 그 사유를 ()안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① 경영적자	② 전세로 지급임차료 없음	③ 조직형태 변경
④ 사업실적 조사가 불가능	⑤ 본사의 사업실적이 합산됨	
⑥ 기타 ()		

조사자

성명	(인)	전화 번호	() - () - ()	H.P	-	-
----	-----	----------	-----------------	-----	---	---

K 금융 및 보험업(65~67) 조사표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3 회사이외법인 및 4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백만원)

14-2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여·수신, 증권, 보험 등)을 통한 총수익액과 소요비용(영업외의 수익 및 비용제외)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영 업 수 익		⑦ 보험료수익 + ... + ㉞ 기타 영업수익 = ① 영업수익							
⑦ 보 험 료 수 익		원보험·재보험 계약 등으로 얻은 보험료							
㉞ 이 자 수 익		예금 등 자금의 대여에 대한 대가수익							
㉞ 수 수 료 수 익		금융·보험 등의 활동에 관계된 용역 제공 대가수익							
㉞ 기 타 영 업 수 익		⑦ 보험료수익~㉞ 수수료수익을 제외한 상품유가증권처분·평가이익, 외환이익, 잡수익 등 영업수익							
② 영 업 비 용		⑦ 금융·보험비용 + ㉞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② 영업비용							
⑦ 금 용 · 보 험 비 용		금융·보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							
금 용 업	㉞ 이 자 비 용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 등							
	㉞ 수 수 료 비 용	외부 거래처 등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							
	㉞ 기 타금용비용	상품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 외환거래손실 등							
보 험 업	㉞ 보 험 금 비 용	사고, 손해 등의 발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된 비용							
	㉞ 환 급 금 비 용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㉞ 책 임 준 비 금 전 입 액	장차 지불책임에 대비하여 기말에 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							
	㉞ 기 타보험비용	배당금 비용, 재보험료 등							
㉞ 판 매 비 와 일 반 관 리 비		㉞ 급여총액 + ... + ㉞ 기타 경비(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의 동일항목은 합산)							
㉞ 금 여 총 액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㉞ 퇴 직 금 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㉞ 복 리 후 생 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㉞ 임 차 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총액							
㉞ 세 금 과 공 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항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㉞ 감 가 상 각 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㉞ 대 손 상 각 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㉞ 기 타 경 비		㉞ 급여총액 ~ ㉞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③ 영 업 이 익		① 영업수익 - ② 영업비용 = ③ 영업이익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1** 단독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2** 본사인 사업체는 「본사조사표(7)」에 작성합니다.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인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자본금 및 출자금								
② 외국인 출자 자본금								

• 2005. 12. 31.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하십시오.

16 유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1) 연 초 잔 액			(2) 연 중 증 가 액			(3) 연 중 감 소 액			(4) 감 가 상 각 비			(5) 연 말 잔 액		
① 토 지															
② 건물 및 구축물															
③ 기 계 장 치															
④ 차량·운반구															
⑤ 기 타 자 산															
⑥ 건설중인자산															
⑦ 합 계															

17 무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1) 연 초 잔 액			(2) 연 중 증 가 액			(3) 연 중 감 소 액			(4) 감 가 상 각 비			(5) 연 말 잔 액		
① 산업재산권															
② 저 작 권															
③ 소프트웨어															
④ 개 발 비															
⑤ 기 타 자 산															
⑥ 합 계															

비 고

• 아래 항목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표를 하십시오. • 기타인 경우 그 사유를 () 안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① 경영적자	② 전세로 지급임차료 없음	③ 조직형태 변경
④ 사업실적 조사가 불가능	⑤ 본사의 사업실적이 합산됨	
⑥ 기타 ()		

조사자

성명	(인)	전화번호	() - () - ()	H.P	-	-
----	-----	------	-----------------	-----	---	---

○ 교육서비스업(80)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조사표

6 조직형태가 ① 개인사업체 또는 ⑤ 비법인단체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백만원)

14-1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사업활동(교육, 의료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한 총수익액과 소요비용(사업이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사업수익	등록금, 수강료, 의료수입, 민간·단체·정부의 보조금 등 총액								
② 사업비용	㉗ 인건비 + ... + ㉘ 기타 경비 = ② 사업비용								
㉗ 인건비	급여(봉급, 수당, 상여금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지급총액								
㉘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총액								
㉙ 세금과 공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㉚ 기타 경비	㉗ 인건비 ~ ㉙ 세금과 공과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③ 사업이익	① 사업수익 - ② 사업비용 = ③ 사업이익								

6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및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백만원)

14-2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사업활동(교육, 의료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한 총수익액과 소요비용(사업이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사업수익	㉗ 등록금수입 + ... + ㉘ 기타 사업수익 = ① 사업수익								
㉗ 등록금(수업료)/의료수익/사회복지사업수익	등록금, 수강료, 강의료/보건·의료수익/사회복지 활동에 의한 수익 등								
㉘ 전입 및 기부금수익	기관·단체·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보조금 등								
㉙ 기타 사업수익	학부모 부담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익								
② 사업비용	㉗ 급여총액 + ... + ㉘ 기타 경비 = ② 사업비용								
㉗ 급여총액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㉘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㉙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㉚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총액								
㉛ 세금과 공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㉜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㉝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㉞ 기타 경비	㉗ 급여총액 ~ ㉝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③ 사업이익	① 사업수익 - ② 사업비용 = ③ 사업이익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1** 단독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2** 본사인 사업체는 「본사조사표(7)」에 작성합니다.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인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 2005. 12. 31.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자본금 및 출자금								
② 외국인 출자 자본금								

16 유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1) 연 초 잔액	(2) 연중증가액	(3) 연중감소액	(4) 감가상각비	(5) 연 말 잔액
① 토 지					
② 건물 및 구축물					
③ 기 계 장 치					
④ 차량·운반구					
⑤ 기 타 자 산					
⑥ 건설중인자산					
⑦ 합 계					

17 무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 백만원)

	(1) 연 초 잔액	(2) 연중증가액	(3) 연중감소액	(4) 감가상각비	(5) 연 말 잔액
① 산업 재산권					
② 저 작 권					
③ 소 프 트 웨 어					
④ 개 발 비					
⑤ 기 타 자 산					
⑥ 합 계					

비 고

• 아래 항목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표를 하십시오.

• 기타란은 그 사유를 ()안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① 경영적자	② 전세로 지급임차료 없음	③ 조직형태 변경
④ 사업실적 조사가 불가능	⑤ 본사의 사업실적이 합산됨	
⑥ 기타 ()		

조사자

성명	(인)	전화번호	() - () - ()	H.P	-	-
----	-----	------	-----------------	-----	---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1** 단독인 사업체만 작성합니다.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 또는 **3** 회사이외법인이면서 **7** 사업체구분이 **2** 본사인 사업체는 「본사조사표(7)」에 작성합니다.

15 자본금 또는 출자금

※ **6** 조직형태가 **2** 회사법인인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백만원)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자본금 및 출자금								
㉗ 외국인 출자 자본금								

• 2005. 12. 31.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하십시오.

16 유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백만원)

	(1) 연 초 잔 액				(2) 연 중 증 가 액				(3) 연 중 감 소 액				(4) 감 가 상 각 비				(5) 연 말 잔 액			
① 토 지																				
② 건물 및 구축물																				
③ 기계 장치																				
④ 차량·운반구																				
⑤ 기타 자산																				
⑥ 건설중인자산																				
⑦ 합 계																				

17 무형 자산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2005년 당기상각비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백만원)

	(1) 연 초 잔 액				(2) 연 중 증 가 액				(3) 연 중 감 소 액				(4) 감 가 상 각 비				(5) 연 말 잔 액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소프트웨어																				
④ 개발비																				
⑤ 기타 자산																				
⑥ 합 계																				

18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J통신업(64) 및 M사업서비스업(72~75),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87~88)만 해당

(단위: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기술 연구 개발 비						
② 기술 도 입 비						
③ 합 계						

• 2005년 1년간 기업체가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투입한 총비용
 • 기술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의 개발비 증가분 등 + 손익계산서의 연구비, 경영상개발비 등
 • 기술도입비: 로열티,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

비 고

• 아래 항목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표를 하십시오. • 기타란은 그 사유를 ()안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① 경영적자	② 전세로 지급임차료 없음	③ 조직형태 변경
④ 사업실적 조사가 불가능	⑤ 본사의 사업실적이 합산됨	
⑥ 기타 ()		

조사자

성명	(인)	전화번호	() - () - ()	H.P	-	-
----	-----	------	-----------------	-----	---	---



승인번호

제 10108 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			
조사구번호			사업체일련번호		
		-			



이 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따라 귀 사업체는 통계자료를 제출할 의무(제12조)가 있으며 조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제13조)하고 있습니다.

본사 조사표

회사법인 또는 회사이의 법인 중 다른 장소에 동일경영의 지사(점)이 1개 이상 있는 본사(점)만 작성합니다.

모든 항목은 기업체 전체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1 기업체명	인터넷주소(URL) http://					응답자	성명				
							전화 () -				
2 대표자명			성별	① 남	② 여						
3 창설년월		년	월	법인등록번호							
4 소재지	읍·면·동		가·리		번지	호	통	반			
			빌딩·시장·상가			동	층	호			

5 조직형태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 ① 회사법인
 - 가 주식회사
 - 나 유한회사
 - 다 합자회사
 - 라 합명회사
- ② 회사이외 법인

6 자본금 또는 출자금

※ 5 조직형태가 ① 회사법인인 사업체만 기입하십시오. (단위: 백만원)

• 2005. 12. 31.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자 본 금 및 출 자 금							
외 국 인 출 자 자 본 금							

7 사업의 종류

• 「사업내용」은 제조, 도매, 소매, 건설 등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을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부터 기입하십시오.
 •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은 사업 내용에 따른 생산품, 취급상품 및 영업종목을 기입하십시오.

	(1) 사업 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 부호
① 주 사업				
② 부사업 1				
③ 부사업 2				

8 종사자 수

• 2005년 1년간 영업기간 중 근무한 월평균종사자수를 기입하십시오. (단위: 명)

	(1) 상용종사자		(2) 임시 및 일일 종사자	(3) 무급종사자	(4) 합 계
		(가) 해외지사(점)파견종사자			
① 남					
② 여					
③ 계					

9 결산마감월

• 2005년 회계연도 결산 마감월을 기입하십시오.

--	--

월

↓ 아래 **10**항 사업실적은 기업체의 「**7** 사업의 종류 **①** 주사업」에 해당하는 유형(6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A 농업(01) 임업(02) B 어업(05) C 광업(10~12) D 제조업(15~37)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F 건설업(45~46) I 운수업(60~63)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에 해당되는 기업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백만원)

10 사업실적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⑦ 제품(상품)매출액 + ⑭ 기타 매출액 = ① 매출액								
⑦ 제품(상품)매출액	광업, 제조, 건설, 수도, 전기 등의 사업활동으로 얻은 매출총액								
① 수출액	⑦ 제품(상품)매출액 중 수출하여 얻은 매출총액								
⑭ 기타 매출액	수수료 등 ⑦ 제품(상품)매출액 이외의 사업활동으로 얻은 기타매출총액								
② 사업비용	⑦ 매출원가 + ④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② 사업비용								
⑦ 매출원가	제품, 상품, 공사, 용역, 운송 등의 매출원가 총액								
④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 급여총액 + ... + ⑩ 기타 경비(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의 동일항목은 합산)								
① 급여총액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비용총액								
⑩ 세금과공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⑩ 기타 경비	① 급여총액 ~ ㉤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③ 영업이익	① 매출액(사업수익) - ② 사업비용 = ③ 영업이익								

G 도매 및 소매업(50~52)에 해당되는 기업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백만원)

10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벌어들인 기업 전체의 매출총액 및 소요비용(영업이익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㉗ 상품매출액 + ... + ㉘ 기타 영업수입액 = ① 매출액								
㉗ 상품매출액	2005년 1년간 상품매출총액(특정매입매장 매출액 포함)								
㉘ 수수료수입액	타인의 상품을 대리판매 또는 중개하고 얻은 수수료 수입액								
㉙ 기타영업수입액	㉗ 상품매출액 및 ㉘ 수수료수입액 이외의 영업수입액								
② 영업비용	㉚ 매출원가 + ㉛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② 영업비용								
㉚ 매출원가	직영상품매출원가 + 특정매출원가 = 매출원가 ㉜ 연초상품재고액 + ㉝ 연중상품매입액 - ㉞ 연말상품재고액								
㉜ 연초상품재고액	2005. 1. 1.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재고액								
㉝ 연중상품매입액	2005년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매입 총액								
㉞ 연말상품재고액	2005. 12. 31.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재고액								
㉛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㉟ 급여총액 + ... + ㊱ 기타 경비(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의 동일항목은 합산)								
㉟ 급여총액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㊱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㊲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㊳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비용총액								
㊴ 세금과공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㊵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㊶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㊷ 기타경비	㉟ 급여총액 ~ ㊶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③ 영업이익	① 매출액 - ② 영업비용 = ③ 영업이익								

H 숙박 및 음식점업(55)에 해당되는 기업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백만원)

10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벌어들인 기업 전체의 매출총액 및 소요비용(영업이익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㉗ 객실료수입액 + ... + ㉘ 기타 영업수입액 = ① 매출액								
㉗ 객실료수입액	객실 사용료 총수입액								
㉘ 음식료수입액	음식(음료 및 주류 포함) 판매 총수입액								
㉙ 기타영업수입액	물건판매, 수영장 사용료, 회의장사용료 등 수입총액								
② 영업비용	㉚ 매출원가 + ㉛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② 영업비용								
㉚ 매출원가	음식조리용 재료구입, 객실용 1회용품 등의 구입총액								
㉛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㉟ 급여총액 + ... + ㊱ 기타 경비(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의 동일항목은 합산)								
㉟ 급여총액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㊱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㊲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㊳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비용총액								
㊴ 세금과공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㊵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㊶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㊷ 기타경비	㉟ 급여총액 ~ ㊶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③ 영업이익	① 매출액 - ② 영업비용 = ③ 영업이익								

K 금융 및 보험업(65~67)에 해당되는 기업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백만원)

10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여·수신, 증권, 보험 등)을 통한 기업 전체의 총수익액과 소요비용(영업외의 수익 및 비용제외)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영업수익	㉗ 보험료수익 + ... + ㉘ 기타 영업수익 = ① 영업수익										
㉗ 보험료수익	원보험·재보험 계약 등으로 얻은 보험료										
㉘ 이자수익	예금 등 자금의 대여에 대한 대가수익										
㉙ 수수료수익	금융·보험 등의 활동에 관계된 용역 제공 대가수익										
㉚ 기타 영업수익	㉗ 보험료수익~㉙ 수수료수익을 제외한 상품유가증권처분·평가이익, 외환이익, 잡수익 등 영업수익										
② 영업비용	㉛ 금융·보험비용 + 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② 영업비용										
㉛ 금융·보험비용	금융·보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										
금 용 업 보 험 업	㉝ 이자비용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 등									
	㉞ 수수료비용	외부 거래처 등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									
	㉟ 기타금융비용	상품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 외환거래손실 등									
	㊱ 보험금비용	사고, 손해 등의 발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된 비용									
	㊲ 환급금비용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㊳ 책임준비금전입액	장차 지불책임에 대비하여 기말에 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									
	㊴ 기타보험비용	배당금 비용, 재보험료 등									
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㉝ 급여총액 + ... + ㉞ 기타 경비(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의 동일항목은 합산)										
㉝ 급여총액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㉞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㉟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㊱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총액										
㊲ 세금과공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항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㊳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㊴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㊵ 기타경비	㉝ 급여총액 ~ ㊴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③ 영업이익	① 영업수익 - ② 영업비용 = ③ 영업이익										

O 교육서비스업(80)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에 해당되는 기업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백만원)

10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사업활동(교육, 의료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한 기업 전체의 총수익액과 비용총액(사업외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사업수익	㉗ 등록금수입 + ... + ㉘ 기타 사업수익 = ① 사업수익										
㉗ 등록금(수업료)/의료수익/사회복지사업수익	등록금, 수강료, 강의료/보건·의료수익/사회복지 활동에 의한 수익 등										
㉘ 전입 및 기부금수익	기관·단체·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보조금 등										
㉙ 기타 사업수익	학부모 부담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익										
② 사업비용	㉛ 급여총액 + ... + ㉜ 기타 경비 = ② 사업비용										
㉛ 급여총액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㉜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㉟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㊱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총액										
㊲ 세금과공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항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㊳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㊴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㊵ 기타경비	㉝ 급여총액 ~ ㊴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③ 사업이익	① 사업수익 - ② 사업비용 = ③ 사업이익										

(단위 : 백만원)

10 사업실적

• 2005년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한 기업 전체의 총수익액 및 소요비용(사업이익의 수익 및 비용 제외)을 기입하십시오.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사업수익		2005년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총액 ※ 대부분 J 통신업(64)은 아래 ㉗, ㉘, ㉙를 합하여 ① 사업수익에 기재							
J 통 신 업 (64)	㉗ 우편 및 소포송달수익	우편물 수집·배달 등의 활동으로 얻은 수익							
	㉘ 금융수익	우체국의 수익 중 금융부분의 수익							
	㉙ 전기통신사업수익	회선임대, 유·무선통신, 부가통신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							
	㉚ 기타 사업수익	㉗ 우편수익 ~ ㉙ 전기통신사업수익을 제외한 기타 사업수익 등							
② 사업비용		㉗ 매출원가 + 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② 사업비용							
㉗ 매출원가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㉑ 급여총액+...+㉙ 기타 경비(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의 동일항목은 합산) = 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㉑ 급여총액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							
㉒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㉓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피복대, 보험료, 경조비,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총액							
㉔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총액							
㉕ 세금과공과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 총액(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㉖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							
㉗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㉘ 기타 경비		㉑ 급여총액 ~ ㉗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수도광열비, 통신비, 연구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소모품비, 잡비 등 모든 비용							
③ 사업이익		① 사업수익 - ② 사업비용 = ③ 사업이익							

11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J통신업(64) 및 M사업서비스업(72~75),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87~88)만 해당

(단위 :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기술연구개발비						
② 기술도입비						
③ 합계						

- 2005년 1년간 기업체가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투입한 총비용
- 기술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의 개발비 증가분 등 + 손익계산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등
- 기술도입비 : 로열티,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

12 유형자산

• 2005년 중 기업체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유형자산을 기입하십시오.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중증가액 - 연중감소액 - 감가상각비

(단위 : 백만원)

	(1) 연초잔액	(2) 연중증가액	(3) 연중감소액	(4) 감가상각비	(5) 연말잔액
① 토지					
② 건물 및 구축물					
③ 기계장치					
④ 차량·운반구					
⑤ 기타 자산					
⑥ 건설중인자산					
⑦ 합계					

13 무형 자산

• 2005년 중 기업체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무형자산을 기입하십시오.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증증가액 - 연증감소액 - 감가상각비

(단위 : 백만원)

	(1) 연 초 잔액	(2) 연 증 증 가 액	(3) 연 증 감 소 액	(4) 감 가 상 각 비	(5) 연 말 잔 액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소프트웨어					
④ 개발비					
⑤ 기타 자산					
⑥ 합 계					

14 관할 사업체(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 현황

① 지사(점)수 계	② 국내 지사(점)수	③ 해외 지사(점)수

• 지사(점)수 = 국내 지사(점)수 + 해외 지사(점)수
 • 프랜차이즈가맹점, 특약점, 대리점 등 자사(自社) 관할이 아닌 사업체는 제외합니다.

14-1 국내 사업체 명부

• 본사에서 관할하는 국내 소재 사업체를 각각 기입하십시오.(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연구소 및 사업체에 해당하는 보조 활동 포함)
 • **14-1** 항의 국내 사업체명부 양식은 홈페이지(<http://scensus.nso.go.kr>)/정보센터/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사(점)수가 42개를 초과할 경우 별지서식으로 기입하십시오.
 (단위 : 명, 백만원)

일련 번호	① 사업체명 (구체적으로 기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행정읍·면·동을 기입)	④ 전화번호	⑤ 종사자수	⑥ 연간 급여액	⑦ 연간매출액 (사업수익)	⑧ 주된 사업내용 (품명 또는 사업활동을 기입)	★소분류
1			시·도 () 시·군·구 읍·면·동	-					
2			시·도 () 시·군·구 읍·면·동	-					
3			시·도 () 시·군·구 읍·면·동	-					
4			시·도 () 시·군·구 읍·면·동	-					
5			시·도 () 시·군·구 읍·면·동	-					
6			시·도 () 시·군·구 읍·면·동	-					
7			시·도 () 시·군·구 읍·면·동	-					
{									
42			시·도 () 시·군·구 읍·면·동	-					

★ 표시란은 통계청에서 기입하는 항목임

조 사 자	성명	(인)	전화 번호	()	-	H,P	-	-
-------	----	-----	----------	-----	---	-----	---	---

☺ 감사합니다 ☺